연구총서 17-AB-05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 and Improvement Plan

최영신 · 장다혜 · 오경석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발간사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체류 외국인은 2017년 10월 기준 2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1년도 국내 체류외국인 56만 명과 비교할 때 약 3.8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범죄의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외국인범죄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에 비하여 범죄피해자로서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범죄피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적절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와 관련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의 문제점을 구체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의 사례연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법 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국내 체류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현행 제도 및 정책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성심을 다한 수행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최영신 선임연구위원, 장다혜 부연구위원,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김수민 인턴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울러 조사자료의 수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해당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과 상담 사례나 인터뷰를 통해 도움을 주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시 경기글로벌센터, 안산 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 집,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시 고려인지원센터, 안산

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안산 단원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다면 단기간 내에 조사연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 진 환

목 차

국문요약 ····· 1

| 제1장 | 서 론 • 최영신·장다혜·오경석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제2절 연구방법 ····· 17

1. 문헌연구 ····· 17
2. 조사연구 ····· 18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조사 ····· 18
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사례 연구 ····· 19
다.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사례 연구 ····· 20

| 제2장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관 및 체류외국인 현황 • 장다혜·최영신 ····· 21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개관 ····· 23

1.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보상제도인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 23

가.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 23
나.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24

2. 형사절차상 권리로서 사법접근권 보장제도 ····· 28
3.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의 지원 ····· 31

가. 의료지원 및 치료비 지원 ····· 31
나.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경제적·물질적·심리적 지원 ····· 32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 34

1. 체류외국인 증가 현황 ····· 34

가. 체류외국인 증가 추이 ····· 34

나.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분포 ····· 36
2. 체류외국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39
가. 체류외국인의 성별, 연령별 분포 ····· 39
나.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 40

| 제3장 |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최영신 ····· 43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 45
1.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 45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역별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 46
제2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특성 ····· 48
1.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8
2.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체류 관련 특성 및 국적 분포 ····· 50
제3절 외국인 범죄피해의 가해자 관련 특성 ····· 53
1.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 53
2.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54
제4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 관련 특성 ····· 55
1. 피해범죄의 유형 ····· 55
2. 피해정도 ····· 57
3. 심리치료 관련 특성 ····· 58
제5절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 61
1.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의뢰처 ····· 61
2.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 내용 ····· 62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내용 ····· 63
4. 범죄피해정도와 외국인피해자 지원 상황 ····· 65
제6절 소결: '범피센터' 지원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 67
1.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 ····· 67
2.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 67

3.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 68
4.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고지 및 안내 ····· 69

| 제4장 | 외국인 범죄피해 사례 분석: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오경석·장다혜 ····· **71**

제1절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사례 분석 ····· 73
1.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례의 개요 ····· 73
2. 외국인 범죄행위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 배제의 문제 ····· 75
3. 체류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 : 통보 의무 면제 제도의 미운영 사례 ····· 77
4. 형사사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 ····· 78
5. 외국인 피해자의 사법접근성 제한 문제 ····· 81
6. 소결: 외국인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지원의 문제점 ····· 84
제2절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 85
1.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사례의 개요 ····· 85
2.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양상 및 특징 ····· 88
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사례 ····· 88
나. 성폭력 피해 사례 ····· 90
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강요 피해 ····· 92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 ····· 94
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 사법접근권 제한과 침해 ····· 94
나. 취약한 체류지위와 여성폭력 피해의 중층결합 ····· 99
다.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보호·지원 배제로 인한 피해의 가중 ····· 103
라.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 미비 ····· 104
마.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체계의 부재 ····· 107
4. 소결: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의 한계 ····· 108
가. 이주여성에 대한 사법접근권 및 지원제도 접근의 제한과 침해 ····· 108
나. 취약한 체류 지위로 인한 피해의 가중과 지원의 한계 ····· 109
다.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배제의 문제 ····· 111

라.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 미비 ····· 111
마.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의 불비 ····· 112

| 제5장 |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다혜 ····· **113**

제1절 국제인권법 및 해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시사점 ····· 115
1.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원칙 ····· 115
가. 유엔 ····· 115
나. 유럽연합 ····· 116
2. 해외 주요 국가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 120
가. 뉴질랜드 ····· 120
나. 영국 ····· 122
다. 독일 ····· 124
라. 일본 ····· 125
3. 헌법상 피해자 보상 명시한 국가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 여부 ····· 126
가. 스위스 ····· 126
나. 멕시코 ····· 128
4. 소결 ····· 130
제2절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131
1. 국제인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 132
가. 국내 주소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의 확대 ····· 133
나. 체류지위 및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의 확대 ····· 135
2. 외국인인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사법접근권 강화 방안의 마련 ····· 136
가. 통역 및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 136
나.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의 체류지위에 대한 보장 ····· 137
다. 외국인에 대한 사법 초기 단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및 안내 강화 ····· 137

3.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마련 ····· 138
4. 통합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전달체계 마련 ····· 140

참고문헌 ····· 141

Abstract ····· 145

부록 :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조사표 ····· 159

표 차례

〈표 2-1〉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 35
〈표 2-2〉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 37
〈표 2-3〉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 38
〈표 2-4〉 체류외국인 성별 현황 ····· 39
〈표 2-5〉 체류외국인 연령별 현황 ····· 39
〈표 2-6〉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2016년~2017년 8월) ····· 40
〈표 3-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접수 및 외국인 지원 현황(2015-2016) ····· 45
〈표 3-2〉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인원 현황 ····· 47
〈표 3-3〉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49
〈표 3-4〉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체류 관련 특성 및 국적 분포 ····· 50
〈표 3-5〉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 및 지원 내용 ····· 51
〈표 3-6〉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성별 분포 ····· 52
〈표 3-7〉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53
〈표 3-8〉 외국인 범죄피해 가해자의 국적·성별·연령별 분포 ····· 54
〈표 3-9〉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 범죄유형 ····· 56
〈표 3-10〉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비자상태별 피해 범죄유형 ····· 56
〈표 3-11〉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 정도 ····· 57
〈표 3-12〉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비자 상태별 피해정도 ····· 58
〈표 3-13〉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 여부별 특성 비교 ····· 59
〈표 3-14〉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신청자의 특성 ····· 61
〈표 3-15〉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의뢰처 ····· 61
〈표 3-16〉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여부 ····· 62
〈표 3-17〉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세부 내용 ····· 62
〈표 3-1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심의를 통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여부 ···· 64
〈표 3-19〉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심의를 통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내역 ···· 64
〈표 3-20〉 피해정도가 심각한 외국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세부 내역 ····· 65
〈표 4-1〉 외국인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사례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 특성 ····· 74
〈표 4-2〉 여성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사례 ····· 86
〈표 4-3〉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사례 ····· 86

그림 차례

[그림 2-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 36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외국인은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의 실태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 역시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을 탐색하고 외국인 범죄피해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및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원칙과 해외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특성 및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은 합법적인 체류외국인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고, 범죄피해구조금은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그러한 법규정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기금의 자격요건 및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색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연구를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언론기사 및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재의 제도상 쟁점을 파악하였다.

나. 사례조사연구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사례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에 대한 조사로서 전국 59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난 2년 동안(2015년~2016년도)에 이루어진 외국인 범죄피해자 87명에 대한 지원 사례 조사이다. 둘째는 이주민 지원 및 상담 전담 기관들을 통해 수집된 사례조사로서 20개 외국인 범죄피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통해 수집한 21개 이주여성 범죄피해 사례에 대한 연구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는 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체 사례의 내용적 특성을 분류하여 계량화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분석하였고, 다른 두 가지 사례조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례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3.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관 및 체류외국인 현황

가. 국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헌법상 범죄피해자 권리] 헌법 제27조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절차가 마련이 되었는데,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로 두고 있다(제16조).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금의 종류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이다(제17조제1항).

[형사절차상 권리로서 사법접근권 보장제도]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 상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1) 가명조서의 작성, 2) 경찰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에 대한 비상호출기 교부, 4) 임시피난처 제공, 5)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내지 임대주택 지원, 6) 법정동행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1) 수사단계에서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 2) 검찰에서의 수사관련 사항, 공판진행사항, 형집행 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 제공, 3)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피해자 수사 및 상담·의료·법률지원을 제공이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무료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역 및 번역 지원은 외국인의 사법절차 접근시 보조인 제공을 통해 가능하다.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의 지원] 의료지원 및 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범죄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를 통해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회복을 위한 경제적·물질적·심리적 지원과 관련하여 1) 간병비와 치료부대비용 및 돌봄비용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 법무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취업지원이 제공되는데, 범죄피해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하기 힘든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으로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범죄피해자 사망시 장례비의 지원과 5) 강력범죄가 주거지에서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 현장정리 지원, 6) 성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이 가능하다.

나. 체류외국인 현황

2017년 10월 현재 체류외국인수는 213만 5천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지난 11년 동안 체류외국인수는 2.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7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수(2,135,049)는 우리나라 전국 주민등록인구수(51,769,092명)의 4.1%를 차지한다.

체류외국인 전체에서 장기체류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해 73%~80% 사이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체류자의 비율은 20~27% 사이에서 변동하므로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이 장기체류자이다.

체류외국인 중에서 '비전문취업(E-9)'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체류외국인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그 절대인원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체류외국인의 자격별 현황에서 특히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국과 어떤 정서적, 문화적 연고가 없는 상태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체류외국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의 비율은 55~57% 정도이고, 여자는 43~45% 정도로 남자가 여자보다 1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체류외국인의 연령분포는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19세 이하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낮고, 상대적으로 20대 이상 50대까지의 연령층 비율은 높다.

2017년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이 중국인으로서 전체 체류외국인의 47.4%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한국계가 31.6%를 차지한다. 두 번째 비율이 높은 국적은 베트남으로서 7.8%이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7.1%, 타이가 5.8%이다. 이외의 국적은 각각 전체 체류외국인의 3% 이하이다. 전체 체류외국인 중에서 각 국적별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적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연방), 몽골이다.

4.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접수 및 지원인원] 2015년과 2016년도 전국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접수인원은 각각 97명과 77명으로 100명을 넘지 않는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만을 받았으며, 상담 이외에 추가

적으로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15년에 40명, 2016년도에는 47명이다. 전체 외국인 범죄피해자 접수인원 중에서 2015년에는 41%, 2016년도에는 61%가 상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범죄피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 2년 동안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외국인 범죄피해자 87명 중에서 남자는 42명(48.3%)이고 여자는 44명(51.7%)으로서 상대적으로 여자의 범죄피해율이 높다. 연령별로 보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10대와 60대의 비율이 체류외국인의 연령별 구성비와 비교하여 더 낮고, 30대의 비율은 현저하게 높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인 경우가 32%(28명)이며, 나머지 68%(59명)는 범죄피해 이전부터 알고 있는 관계(남편, 직장 관련, 동거인 등)이다. 외국인 범죄피해는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피해범죄의 유형]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및 상해'가 전체 사례의 54%(47명)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이 20.7%(18명), 성폭력이 8.0%(7명), 살인미수가 6.9%(6명), 살인이 5.7%(5명)를 차지한다.

[피해정도] 조사된 전체 외국인 범죄피해자 87명 중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5명(5.7%)이며, 장해·중상해인 경우는 7명(8.0%), 상해인 경우는 72명(82.8%)으로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는 상해의 비율이 가장 높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범죄피해 지원 의뢰처가 경찰인 경우는 59명(63%)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외에 본인인 경우가 9명(10%), 검찰이 7명(8%)이며, 기타 다른 기관이 8명(9%)을 차지한다.

2015년과 2016년도에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죄피해자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례는 불과 8개 사례에 불과하다.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죄피해자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상해진단이 5주 이상인 사례로서 치료비 액수가 큰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전체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지극히 제한된 사례에 국한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요청을 한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5. 외국인 범죄피해사례 분석: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가. 외국인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지원의 문제점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의 접근성 문제] 외국인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협소한 지원 대상의 범위, 엄격하고 복잡한 인증 요건 등이 중첩되어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의 구조 제도 이용률을 매우 낮게 만든다. 어렵사리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경제적인 분야에 집중된다는 점이 만족률을 떨어뜨린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자체의 인지도 문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매우 떨어진다. 사례 조사 과정에서 만나본 외국인과 접촉하는 공공부문 종사자, 형사기관 관계자, 민간지원단체 활동가 등 가운데서 이 제도와 그 이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범죄 피해 당사는 말할 나위도 없다. 피면접자 대부분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럼 한 번 이용해봐야겠네요.”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외국인의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거리감] 외국인 범죄피해 당사자들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 우려되는 신분과 체류 자격에서의 불이익, 소수 언어 통번역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불공정한 수사의 개연성, 폭력적인 갈등 해소 방식을 관용하는 자국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공권력에 대한 무관심 등이 그 요인이다. 범죄피해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요인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사법 제도 자체에의 거리감을 완화시키려는 조처들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지원 제도 활용을 꺼리는 데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수사와 연동된 비자 제도의 불가피한 변동, 미등록체류자의 보호와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통보의무의 존치, 범죄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와 동일시하는 관행, 묻지마 폭행 등과 같은 인종주의적인 행위를 범죄로 특정할 법제의 부재로 인한 인종범죄 수사의 소극성, 자발적인

폭력에 의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정당화하는 외국인들의 고유한 문화, 한국인의 사법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의 부재, 형사 및 사법기관의 단일언어 업무 환경(소수언어 통역의 미비) 등이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의 지원 제도 활용률을 매우 낮게 만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나.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지원의 문제점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외국인인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등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주여성에 대한 사법접근권 및 지원제도 접근의 제한과 침해] 이주여성들은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과 배제로 인해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에 있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1) 사법절차에서의 통역과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2) 경찰 및 사법기관 종사관들이 여성폭력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성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3) 이주여성의 취약성에 대한 배려 없이 한국인인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주 여성들의 사법 및 보호·지원 제도의 접근이 어렵다.

[취약한 체류 지위로 인한 피해의 가중과 지원의 한계] 이주여성의 체류지위가 가해자인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결혼이민자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을 마련하여 형사절차 및 권리구제절차의 진행 중 혹은 완료 후 체류연장에 대해 재량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여성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이 부족하고 규정의 적용이 행정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범죄 피해와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해 이외의 다른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상의 어떠한 배려도 없어, 그 외의 범죄피해자는 사법절차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에게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기관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 신고로 인해 본인의 미등록 상태가 드러나 강제로 추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과정

에서 피해자의 미등록 체류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공무원에게 부과되어 있는 통보의무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 역시 행정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고 면제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며 경찰 및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이러한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이해하고 있지 못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배제의 문제] 현재 범죄피해구조금제도를 제외한 기타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의 범죄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피해가 방치되고 피해자의 삶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 미비] 한국에 인신매매 관련 처벌규정 이외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체계는 아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나마 성매매 목적으로 유입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성매매방지법법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초기 피해자 식별에 실패함으로 인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국비용이나 생계비 지원, 또는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의 불비]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거주 및 귀국 관련 비용 등의 지원 욕구가 있으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6.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국제인권법 및 해외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제도의 시사점

[국제법상 인권에 기초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원칙]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보호, 지원은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내지 결과나 피해자의 국적, 체류지위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피해에 대응하는 것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공동체 내 회원국들은 국내법에서 효력을 갖는 유럽협약을 바탕으로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지원의 기준을

확대해왔다. 영국이나 독일 역시 보상금액에 차등을 주긴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 범죄피해자보상] 뉴질랜드, 영국, 독일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과 스위스는 체류자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주소가 국내에 있는 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적법한 체류자격의 요건을 두고 있는 국가들 역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괴롭힘, 사기, 착취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부와 인민국의 협력을 통해 이들의 범죄피해에 대해 지원하며 형사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 외국인 이주자의 체류 자격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헌법상 피해자 보상을 명문화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 여부] 스위스와 멕시코는 모두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보호·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국적이나 주소지 여부가 피해자 구조 여부와 관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외국인이라도 피해자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및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는 피해자 지위의 인정을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에 따른 국제사법기구의 결정까지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 보상 및 지원의 대상으로 외국인을 포괄하고 있다.

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국제인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1) 한국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가해자의 배상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호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제한은 한국에서 심각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스위스 등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중대한 범죄피해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구조대상피해자의 범위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일본, 스위스와 같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⑵ 체류지위 및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검찰청 예규 및 법무부 피해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 한국인에 의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로 외국인 지원을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없애고, 피해자의 체류지위나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의 내용과 피해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피해회복 및 사법접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인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사법접근권 강화 방안의 마련]

⑴ 통역 및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서는 가치중립과 공신력이 보장된 통역인에 의한 통역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역자에 대해 범죄행위별 특성과 관련 법률상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 통역 및 번역 지원제도의 마련을 위해 현재 통역시스템을 갖춘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⑵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의 체류지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모든 범죄피해에 대해 형사절차 및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일시적인 합법적 체류지위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체류가 필요한 경우 절차의 완료 이후에도 체류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류연장의 허가를 행정관청의 재량사항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에 따라 일정한 체류기간과 요건을 명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체류연장을 당연 허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⑶ 외국인에 대한 사법 초기 단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및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의 고지·안내가 이해가능한 언어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내의 내용에는 체류지위 및 거주의 문제 등 외국인 특성과 관련된 내용 및 이주민 상담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소개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마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조치는 뉴질랜드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참조할 수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경찰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통해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국민과 동일한 범죄피해자 보상, 보호 및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며, 노동부와 외교부의 체계를 구축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피해자의 본국송환과 장기체류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있다.

[통합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전달체계 마련] 외국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외국인 지원체계와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부서 및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 지원체계가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외무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 부서, 이주 노동 담당 부서와 정보공유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와 이주민 지원 단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최영신·장다혜·오경석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체류외국인은 2017년 10월 현재 213만명을 넘어섰다. 국내 체류외국인수는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매년 5~10% 전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 국내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대책 역시 그러한 요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발생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비교적 활발히 논의되어 왔지만(김정규·신동준, 2010; 이훈동, 2011; 홍세영·이현, 2011; 차훈진·조용철, 2012; 최영신·강석진, 2012; 최영신·장현석, 2016), 외국인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외국인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외국인의 범죄피해 경험을 직접 조사한 연구(박동수, 2017; 송봉규, 2015)는 매우 제한적이다.[2]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송봉규, 2015)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8개 국적 외국인 주민의 성, 연령, 거주기간, 소득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절도, 사기, 폭행, 성폭력, 조직폭력, 노동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출입국·외국정책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14면 참조.
2) 이전에 실시된 외국인의 범죄피해와 관련된 조사연구로는 여성가족부가 2006년도에 결혼이민자 1,011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범죄피해를 조사한 연구(여성가족부, 2006)가 있다.

착취 등의 범죄피해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외국인의 국적, 성별, 연령, 소득에 따라 범죄피해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다. 박동수(2017)도 선행 연구와 비슷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의 문화와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인의 특성을 사회적 장애, 자기방위능력의 미약, 피해신고 부자유 등으로 특징짓고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은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내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집단을 대상으로 범죄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여기에서는 체류외국인의 일반적 특성(성, 연령, 소득 등), 체류외국인의 다문화 특성(국적, 거주기간, 한국어 수준 등), 경찰접촉특성의 차이가 범죄피해경험에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런 연구들은 외국인의 범죄피해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안내서가 되지만 조사대상인원이 소규모 집단이어서 외국인 범죄피해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런 연구들은 제한적이나마 외국인이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으로써 외국인 범죄피해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 및 그에 대한 지원 및 보호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정 단체나 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을 탐색함으로써 현행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민간기구로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해당 단체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의 문제점을 구체적 맥락을 통해 이해하기 위하여 외국인 범죄피해 사례연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원칙과 해외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특성 및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경제적인 지원은 합법적인 체류외국인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고, 범죄피해구조금은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지

급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그러한 법 규정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기금의 자격요건 및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을 어떻게 확대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이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이므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내용과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문헌 연구를 활용하여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 분석한다. 또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등 역시 문헌연구의 대상이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언론 기사 및 관련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등 역시 문헌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재의 제도상 쟁점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 권리 및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법 원칙을 분석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의 보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국제 규약이나 지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외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제도 관련 법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되기 어려운 해외의 범죄피해자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의 보고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홍보물, 정부 및 민간지원단체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료 역시 문헌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우리의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헌법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하게 헌법상 범죄피해자 권리 또는 구조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국가와의 비교법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에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http://world.moleg.go.kr)에 게시되어 있는 외국의 헌법 규정의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분석하여 헌법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및 보호·지원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2. 조사연구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조사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난 2년 동안(2015년~2016년도)에 이루어진 외국인 범죄피해자 대상 지원 사례를 조사하였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조사는 2017년도 8월에 연구진이 작성한 조사표 양식[3]에 각 센터의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1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전자메일로 각 지역 센터에 조사표를 송부하였고, 각 지역 센터는 작성된 조사표를 연구진에 직접 송부해주었다. 누락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각 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보완하였다.

조사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를 접수하고 이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작성하게 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 [기초상담일지],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보고] 자료에 기입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조사표에는 ① 범죄피해자의 특성(성, 연령, 합법체류 여부, 외국인의 체류자격, 국적 등), ② 가해자의 특성(피해자와의 관계, 성, 연령, 국적 등) ③ 범죄피해 관련 내용(피해범죄의 유형, 피해정도 등), ④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내용(지원의뢰처,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 세부 내역 등)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조사결과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 동안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 것으로 보고된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모두 87명이었으며, 각 지역 센터별 사례 현황은

3) 〈부록 1〉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조사표 참조.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87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제3장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사례 연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사례조사는 이주민 지원 및 상담 전담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조사, 관련 사례를 다뤄본 적 있는 해당 기관의 방문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수사기관 방문 조사도 병행되었다.

사전 조사는 안산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 집,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부천경기글로벌센터, 고려인지원센터, 의정부엑소더스,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안산글로벌미션센터를 비롯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상담활동가네트워크 회원 기관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외국인 범죄 피해자 상담 경험이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관계자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천경기글로벌센터, 안산고려인지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안산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 안산외국인노동자·중국동포의 집,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이에 해당한다. 천안이나 부산 등 거리가 있는 지역 소재지 기관 관계자와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의 사례는 안산시외국인상담지원센터에서 소개해 주었다.

심층면담자 중에는 중국동포 범죄피해자 K씨도 포함된다. 방문 및 심층면담 조사를 통해 외국인 범죄 피해자 관련 상담일지, 진단서 및 소송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외국인 집중 지역 수사 기관에도 세 차례 방문하여 전체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외사담당관, 수사담당관, 범죄피해자보호담당관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방법으로 20건 가량의 사례들을 수집할 수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번 보고서에 적절하리라고 판단되는 10개 사례를 선별하여 보고서에 인용하였다.

다.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사례 연구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사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의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수집되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고명숙 회장,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의 이주여성의 범죄피해 및 지원경험에 대한 사례와 개선의견에 대한 발표문을 중심으로 이주여성의 범죄피해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워크샵 토론과정에서 설명된 이주여성 범죄피해 사례들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수집된 이주여성 범죄피해 지원 사례를 추가하였다. 워크샵을 통해 수집된 사례는 전국에 위치한 이주여성쉼터의 상담사례 및 대구이주여성상담소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상담사례이다.

그 결과 이주여성 범죄피해 사례가 21개 수집되었다. 이 중에서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 사례는 14개, 결혼이주여성이 아닌 이주여성의 범죄피해 사례는 7개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혼이주여성 및 이주여성노동자의 피해 및 지원의 일반적 특성은 제4장의 〈표 4-2〉와 〈표 4-3〉에 제시하였다.

제2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관 및 체류외국인 현황

장다혜·최영신

제2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관 및 체류외국인 현황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개관

1.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보상제도인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가.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우리 헌법은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헌법 제27조제5항에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1985년 UN의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4]에 의해서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나라는 한국, 멕시코, 스위스에 한정되어 있다.[5]

보상(reparation)의 개념을 사용하는 멕시코와 달리 한국은 구조(救助)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조라는 용어가 "재난을 당해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는 시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상받을 권리의

4) UNGA, Resolution 40/34: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 UN Doc A/RES/40/34.

5)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에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번역 제공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의 헌법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가진 국가는 멕시코와 스위스, 한국이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헌법상 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정방식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한국과 멕시코는 권리의 형식으로, 스위스는 국가 의무의 형식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의미를 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6]

나.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1) 개요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범죄피해자구조에 관한 절차가 마련되었는데, 1987년 마련되었던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자를 '생명 및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고, 법에 의해 구조금 지급의 요건을 가해자 불명이거나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구조금 지급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0년 5월 14일 구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폐지하고 기존의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통합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구축하였다. 새롭게 통합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는 일실수익과 구조금액을 연동함으로써 구조금액을 상향하였으며, 구조금 지급 요건으로 가해자 불명 또는 무자력 요건을 삭제하고, 구조금 지급 대상인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사망 또는 중장해에서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자로 확대하였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서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로 두고 있다(제16조).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금의 종류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이다(제17조제1항).

2) 구조금의 종류 및 요건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본 법에 따라 우선순위를 갖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으로, 배우자 및 구조피해자 사망 당시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

6) 김현철(2015),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2015.8.), 미간행, 7-8쪽.

고 있는 자녀, 구조피해자 사망 당시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그 외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된다(제17조제2항및제18조),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 외에 달리 요구하는 요건은 없으며,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안에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해야 한다.[7]

장해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이후에 남은 신체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구조피해자 본인이게 지급하는 구조금이다(제17조제3항및제3조제1항제5호). 여기에서의 장해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1급에서 제4급까지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한다(령별표1).

중상해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었을 때에 구조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다(제17조제3항및제3조제1항제6호). 중상해의 기준은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그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앞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령제3조).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구조금은 정신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이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내지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에 지급되며(령별표1), 중상해구조금은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 1주 이상 입원치료와 2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중상해로 인정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8]

구조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긴급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28조및령제28조).

---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2017년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 기초교육과정 교재(2017.10), 법무부(미간행), 5쪽.

8) 위의책, 6쪽.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추후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차액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조금 지급 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8조제5항).

구조금의 산정 기준은 구조피해자가 피해발생 직전 3개월 간 월 평균소득을 한정하거나 공신력 있는 통계에 의한 보통 인부의 월 평균임금(도시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2~48개월 수를 곱한 후 각 구조금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반영한 배수를 곱하여 결정한다(제22조및령제20조및제21조). 유족구조금의 경우 유족순위에 따라 개월수가 24~48개월까지 인정되며, 유족 수, 연령, 부양관계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의 48개월분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령제22조및별표4). 장해구조금의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개월수가 4~40개월까지 인정되며, 부양여부 및 필요성, 연령, 친족관계 등을 고려한 비율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의 40개월분 범위 이내에서 결정한다(령23조및별표5).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의원, 조산원등 제외)에서 발행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30일을 1개월로 환산하여 치료에 필요한 실 개월수에 따라 2~40개월까지 인정된다(령제24조).

현재 구조금제도에서는 부부,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 동거 친족, 그 외의 친족 간에 발생하는 경우에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는 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제19조제1항및제2항).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배제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4년 10월 15일 법개정을 통해 제19조제7항을 신설하여,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인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 대한민국 영역 내, 대한민국 영역 밖의 국적선 및 국적기 내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에 의한 행위·강요된 행위·긴급피난에 의한 피해는 포함되지만 정당방위·정당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제3조제1항제4호). 이에 따라 외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범죄피해

는 구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라 하더라도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현재 법규상 외국과의 상호보증의 절차나 방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법무부에서는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의 해석을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상호보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구조금 지급 신청 및 결정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제25조제1항). 지구심의회는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며, 관할 구역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제24조제1항및제2항). 지구심의회는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지급한다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이하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26조및제24조). 본부심의회는 4주 이내에 결정을 하며, 각하된 결정이 법령 위반이거나 신청 오류인 경우 해당 지구심의위원회에 환송할 수 있다(제27조).

4) 구조금의 특징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국가에 의해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9]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9) 김현철(2015), 위의글, 177쪽 참조.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제21조제1항및제2항). 비록 보충성의 원칙이 전제되긴 하지만, 범죄의 예방과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와 사회국가의 이념에 근거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적 정책의 차원에서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본질이 있다는 다수의 학설에 근거해볼 때,[10]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범죄피해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에 근거한 피해자 지원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른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상 경제적 지원 중 가장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범죄 피해로 인해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범죄피해자들이나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평가이다.[11]

2. 형사절차상 권리로서 사법접근권 보장제도

범죄피해자의 권리로서 사법접근권의 보장은 국제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주요한 축이다. 국내에서 보장되고 있는 사법접근권 보장제도는 형사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형사소송법」 및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법률 등에서는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피해자 등 증인의 신원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증거로 제출되는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가명조서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화고 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7조및제9조). 둘째, 범죄신고자와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에 의한 신변안전조치로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3조및령제7조) 셋째, 경찰청 및 법무부에서는 특정

10) 김창휘(2010),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개정된 범죄피해자법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50호, 453-456쪽; 김혜경(2015),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6(1), 5-7쪽; 이공주(2016),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6(4), 137-141쪽 참조.

11) 최수형 외(2014), 전국범죄피해조사(IV): 2014년 범죄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3쪽 이하 참조.

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2조의 범죄 피해를 경험한 이들 중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을 위한 GPS 기능이 있는 비상호출기를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호출하면 경호업체 출동 및 경찰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호출기의 지급은 형사절차의 종료 전후 모두 신청가능하며, 지급된 날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12] 넷째, 신변의 보호를 위해 거주지에서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임시숙소 연계 및 숙박비 제공이나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안전가옥, 범죄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의 임시주거 등 피해자보호시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의 긴급피난처 및 쉼터를 활용할 수 있다.[13] 다섯째, 사망, 장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거나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거나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하거나 신변보호의 필요가 있어 영구적인 주거이전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상 취약자의 범위에 범죄피해자를 포함하여 국민임대주택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매입임대주택 내지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내 피해자지원실에서 이사비용 등 이전비를 지급하며, 형사절차의 종료 전후 모두 신청할 수 있다.[15] 마지막으로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등 증인 출석 시 심리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법정동행서비스를 제공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서 제공하는 증인지원관제도를 통해 가해자 등 가족과의 대면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6]

다음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청은 각 경찰서 내에서 피해자 서포터, 피해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여 신변안전조치,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제도 안내를 제공한다.[17] 또한 검사는 범죄피해자등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수사관련 사항, 공판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위의책, 24-25쪽.
13) 최수형 외(2014), 위의책, 46-50쪽.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위의책, 18-19쪽.
15) 위의책, 25쪽.
16) 위의책, 26쪽.
17) 최수형 외(2014), 위의책, 43쪽

진행사항, 형집행 상황, 보호관찰 집행상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검찰수사관이 범죄피해자에게 문의하여 의사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18] 경찰청은 경찰청 훈령인 「범죄피해자 보호규칙」상 강력범죄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피해자진술권, 수사 진행사항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 신청 권리, 상담지원 신청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해당확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19] 또한 여성가족부에 의해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자에 대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해바라기센터가 설치되어 피해자 수사 및 상담·의료·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20]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과 관련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 피해자의 법률 조력을 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피해자국선변호사는 법률상담, 피해자 수사 및 재판 진술 시 동행, 의견서 제출, 구속 전 심문절차 참여, 증거보존절차 참여, 합의서 작성, 기록의 열람·등사, 공판절차 출석,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및 신청, 양형 및 항소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21]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고소대리를 위한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달리 형사사건 이외에 민사 및 가사사건도 지원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이혼소송에 대한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역 및 번역 지원은 피해자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경우 보조인으로서 통역·번역 등을 위한 전문가를 선정·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활용된다.

---

18) 위의책, 57쪽.
19) 위의책, 45쪽.
20) 위의책, 61쪽.
21) 위의책, 49쪽.

3.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의 지원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 지원은 크게 범죄피해로 발생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지원(치료비지원 포함)과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경제적·물질적·심리적 지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가. 의료지원 및 치료비 지원

우선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7조제1항).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치료비 지원에 더하여 2011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치료비 지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의 진단을 받은 범죄피해자에게 이루어지며, 5주 이상의 상해의 경우에는 해당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5주 미만 상해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2017년 현재 1인당 연 1,500만 원, 총액 5,000만 원의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다.[22] 또한, 법무부에서는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범죄피해자복지센터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여 강력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 지원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전국 11개의 스마일센터가 운영중이다. 스마일센터는 24시간 전화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평가, 심리치료, 생활관 입소자 프로그램, 법률지원, 사회적 지원, 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23] 그 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역 내 병원과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진료 또는 치료비 감액 지원을 받고 있다.[24]

---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7), 위의책, 13쪽.
23) 위의책, 10-11쪽.
24) 위의책, 14쪽.

나.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경제적·물질적·심리적 지원

첫째,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치료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 간병비와 치료부대비용 및 돌봄비용 지원제도가 있다. 이러한 비용의 지원 대상은 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 등 형법상 구성요건 해당성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가해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 가해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다. 지원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어야 하며,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해자가 외국인이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본 지원제도의 신청은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간병비의 지원은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요양병원의 입원치료를 하는 동안 간병할 가족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된다. 치료부대비용 지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원거리 의료시설 내방을 위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이 발생할 경우 가능하다. 돌봄비용 지원은 13세 미만의 범죄피해 아동이거나 범죄피해를 입은 자의 13세 미만 자녀로써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서비스, 활동보조인 등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분에 한정하여 이루어진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서비스 등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적 지원 부분을 제외한 본인 자부담액에 대해서만 지원한다.[25] 피해회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신청은 해당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하고, 각 센터 내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요건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연합회 추천을 결정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인 후 비용을 지급한다. 간병비의 지원한도액은 1,500만 원이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거쳐 기존 지급액(24시간 8만 원, 12시간 6만 원)의 1/2 수준(24시간 4만 원, 12시간 3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요양병원 치료부대비용 역시 지원 한도액을 5,000만 원이나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특별결의를 거쳐 기존 지급액(8만 원)에서 1/2 수준(4만 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돌봄비용은 원칙적으로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되,

25) 위의책, 19-20쪽.

피해 아동의 피해정도, 평소 생계곤란 여부(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등) 및 일상생활 복귀곤란 여부(의사 소견서 등)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및 300만 원씩 2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8개월 이내에서 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1인당 지원 누계액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검토 후 지원이 가능하되, 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의 특별결의 후 지원이 가능하다.[26]

둘째,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을 위한 또 다른 경제적 지원은 법무부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취업지원이다. 범죄피해자의 사회적 복귀를 통해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27]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대상 범죄피해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기 힘든 경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1인당 총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교육 훈련비를 지원한다. 취업지원의 신청은 범죄피해자가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센터 내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요건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연합회 추천을 결정하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인 후 비용을 지급한다.[28]

셋째, 범죄피해자는「긴급복지지원법」[29]에 따른 긴급지원으로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을 위한 경제적, 물질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등 생계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등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교육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기

26) 위의책, 20-21쪽.
27)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함(「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참조).
28) 위의책, 21-22쪽.
29)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상담정보를 제공받거나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다.[30] 이러한 긴급지원은 주로 해당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넷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의 지원이 가능하며, 장례비 지원은 해당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섯째, 강력범죄가 주거지에서 발생한 경우 피해현장을 지원함으로써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유족의 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범죄피해 현장정리 지원제도가 있다.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여섯째, 성폭력 및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 자립자활교육과 취업정보의 제공뿐만 아니라 심리 및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심리적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각 상담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1. 체류외국인 증가 현황

가. 체류외국인 증가 추이

〈표 2-1〉은 2006년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체류외국인의 증가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체류외국인수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단기체류 외국인을 합한 숫자인데, 장기체류 외국인에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수가 포함된다.

30) 위의책, 26-27쪽.

〈표 2-1〉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총계(C=A+B)	전년대비 증가율(%)	장기체류(A) (등록+거소신고)	단기체류(B)
2006년	910,149(100.0)	121.8	660,607(72.6)	249,542(27.4)
2007년	1,066,273(100.0)	117.2	800,262(75.1)	266,011(24.9)
2008년	1,158,866(100.0)	108.7	895,464(77.3)	263,402(22.7)
2009년	1,168,477(100.0)	100.8	920,887(78.8)	247,590(21.2)
2010년	1,261,415(100.0)	108.0	1,002,742(79.5)	258,673(20.5)
2011년	1,395,077(100.0)	110.6	1,117,481(80.1)	277,596(19.9)
2012년	1,445,103(100.0)	103.6	1,120,599(77.5)	324,504(22.5)
2013년	1,576,034(100.0)	109.1	1,219,192(77.4)	356,842(22.6)
2014년	1,797,618(100.0)	114.1	1,377,945(76.7)	419,673(23.3)
2015년	1,899,519(100.0)	105.7	1,467,873(77.3)	431,646(22.7)
2016년	2,049,441(100.0)	107.9	1,530,539(74.7)	518,902(25.3)
2017년 10월	2,135,049(100.0)	104.2	1,570,759(73.5)	564,290(26.4)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14면 재구성.

2006년도 국내 체류외국인수는 91만명 정도였는데, 2017년 10월 현재 체류외국인수는 213만 5천명을 상회하고 있어 지난 11년 동안 체류외국인수가 2.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7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수(2,135,049)는 우리나라 전국 주민등록인구수(51,769,092명)[31]의 4.1%를 차지한다.

〈표 2-1〉에서 체류외국인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매년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06년과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121.8%와 117.2%로서 매우 높았으며, 이후에도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매년 5~10% 전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의 〈그림 2-1〉은 체류외국인의 증감추이를 정리한 것인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외국인 전체에서 장기체류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해 73%~80% 사이에서

3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7.10.31. 기준).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단기체류자의 비율은 20~27% 사이에서 변동하므로 체류외국인의 대부분이 장기체류자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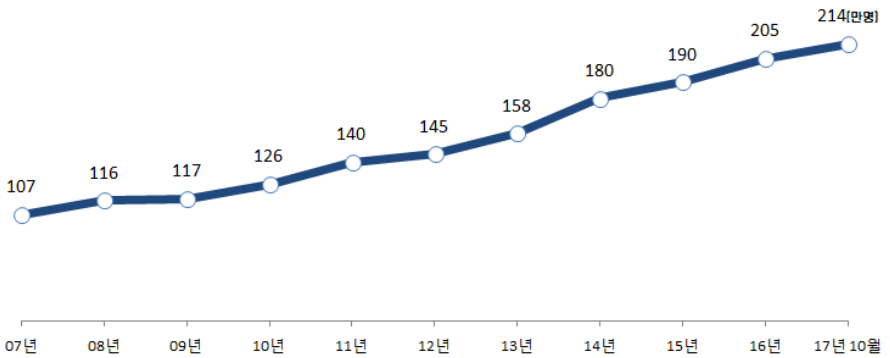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p.13.

[그림 2-1] 체류외국인 증감추이

나.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분포

〈표 2-2〉은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외국인의 체류비자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해당 비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영주(F-5)', '유학(D-2)', '거주(F-2)', '기타'로 구분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재외동포(F-4)',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비자의 비율이 높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 중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낮은 대학졸업자, 기업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장기체류 비자인데, 유효기간이 없고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32] 이 비자로는 공사장이나 식당 등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지만 이 비자를 이용한 불법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전문취업(E-9)'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거하여 발급하는 비자로서 동남아지역 등 16개 국가와 협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체류자격으로는 최장 4년 10개월까지 취업을 할 수 있다. '방문취업(H-2)'은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

32) [네이버 지식백과] F-4 비자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는 만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비자이다. 농축산업,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간병인 등 38개 단순노무분야의 취업이 허용된다. '방문취업(H-2)'은 모두 단순노무분야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인데, '방문취업(H-2)'은 외국국적의 동포라는 점에 차이가 있으며, '재외동포(F-4)'비자는 단순노무분야의 취업이 허용되지 않지만 해당 체류자격을 갖고 단순노무분야에 불법취업의 형태로 고용된 경우가 많다.

〈표 2-2〉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단위 : 명, (%)

체류자격 / 연도	계	재외동포 (F-4)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영주 (F-5)	유학 (D-2)	거주 (F-2)	기타
2013년	1,576,034 (100.0)	235,953 (14.9)	246,695 (15.6)	240,178 (15.2)	100,171 (6.3)	60,466 (3.8)	39,704 (2.5)	572,569 (36.3)
2014년	1,797,618 (100.0)	289,427 (16.1)	270,569 (15.0)	282,670 (15.7)	112,742 (6.2)	61,257 (3.4)	37,504 (2.0)	743,449 (41.3)
2015년	1,899,519 (100.0)	276,042 (14.5)	285,342 (15.0)	328,187 (17.3)	123,255 (6.5)	66,334 (3.5)	38,881 (2.0)	781,478 (41.1)
2016년	2,049,441 (100.0)	372,533 (12.4)	279,187 (18.2)	254,950 (13.6)	130,237(6.4)	76,040 (3.7)	39,681 (1.9)	896,813 (43.8)
2017년 10월	2,135,049 (100.0)	409,178 (19.2)	278,308 (13.0)	229,901 (10.8)	135,390(6.3)	92,233 (4.3)	40,391 (1.9)	949,648 (44.5)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해당연도, 『출입국·외국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16면 참조.

〈표 2-2〉를 보면, 2017년 10월 현재 '재외동포(F-4)'가 19.2%, '비전문취업(E-9)'이 13%, '방문취업(H-2)'이 10.8%로서 전체 체류외국인의 43.0%를 차지하며, '영주(F-5)'가 6.3%, '유학(D-2)'이 4.3%, '거주(F-2)가 1.9% 정도이다. 이외에 나머지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45% 정도를 차지한다.

2013년 이후에 체류자격 분포를 비교해보면, '재외동포(F-4)'의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이고,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체류기간의 제약이 없는 '재외동포(F-4)'의 비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전문취업(E-9)'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체류외국인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비전문취업(E-9)'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 절대인원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체류외국인의 자격별 현황에서 특히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방문취업(H-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국과 어떤 정서적, 문화적 연고가 없는 상태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표 2-3〉은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33]의 성별, 국적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2017년 10월말 현재 국민의 배우자로서 외국인은 154,755명이고, 이 중에서 남자는 16.2%(25,012명)이고, 여자는 83.8%(129,742명)로서 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중국이 37%로 가장 높으며, 베트남이 27%, 일본이 8.6%, 필리핀이 7.6%, 캄보디아가 2.9%, 타이가 2.3%, 몽골이 1.5%를 차지한다. 이외의 국적은 모두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2017년 10월 31일 현재)

단위 : 명

구분 \ 국적	계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54,755 (100.0)	57,506 (37.2)	21,472	42,002 (27.1)	13,367 (8.6)	11,755 (7.6)	4,466 (2.9)	3,564 (2.3)	2,380 (1.5)	19,714 (12.7)
남자	25,012 (16.2)	12,041	7,110	1,674	1,238	363	104	81	125	9,386
여자	129,742 (83.8)	45,465	14,362	40,328	12,129	11,392	4,362	3,483	2,255	10,328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해당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27면 참조.

33) 2009년 이전 : F-1-3(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얻은 자 중에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F-2-1(거주 체류자격을 얻은 자 중에서 국민의 배우자) / 2010년 이후 : F-2-1, F-5-2(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자 중에서 국민의 배우자) 및 F-6(결혼이민, 2011.12.15. 신설)

2. 체류외국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 체류외국인의 성별, 연령별 분포

체류외국인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2013년 이후 2017년도 10월 현재까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의 비율은 55~57% 정도를 차지하고, 여자는 43~45% 정도를 차지하며,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는다. 매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체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10%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체류외국인 성별 현황

단위 : 명(%)

성 / 연도	합계	남	여
2013년	1,576,034(100.0)	870,176(55.2)	705,858(44.8)
2014년	1,797,618(100.0)	94,214(55.3)	803,404(44.7)
2015년	1,143,087(100.0)	656,265(57.4)	486,822(42.6)
2016년	2,049,441(100.0)	1,117,206(54.5)	932,235(45.5)
2017년 10월	2,135,049(100.0)	1,180,556(55.3)	954,491(44.7)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해당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재구성.

〈표 2-5〉 체류외국인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연령 / 연도	합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
2013년	1,576,034 (100.0)	1,888 (5.8)	466,629 (29.6)	377,626 (24.0)	287,556 (18.2)	224,379 (14.2)	127,956 (8.1)
2014년	1,797,618 (100.0)	108,854 (7.5)	511,924 (35.4)	435,446 (30.1)	318,182 (22.0)	268,421 (18.6)	154,791 (10.7)
2015년	1,143,087 (100.0)	66,698 (5.8)	348,387 (30.5)	304.795 (26.7)	194,581 (17.0)	184,478 (16.1)	44,148 (3.9)
2016년	2,049,441 (100.0)	141,991 (6.9)	552,036 (26.9)	505,519 (24.7)	336,044 (6.4)	308,344 (15.0)	205,507 (10.0)
2017년 10월	2,113,347 (100.0)	135,491 (6.4)	542,691 (25.7)	529,743 (25.1)	353,759 (16.7)	317,530 (15.0)	234,133 (11.1)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해당연도,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재구성.

체류외국인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표 2-4〉에서와 같이, 일반국민의 연령분포와 비교하여 19세 이하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은 낮고, 상대적으로 20대 이상 50대까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19세 이하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그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나.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2016년도와 2017년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체류외국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적은 중국인으로서 전체 체류외국인의 47.4%를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한국계가 31.6%를 차지한다. 두 번째 비율이 높은 국적은 베트남으로서 7.8%이며,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7.1%, 타이가 5.8%이다. 이외에 국적은 전체 체류외국인의 3% 이하이다. 전체 체류외국인 중에서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적은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연방), 몽골이다.

〈표 2-6〉 체류외국인 국적별 현황(2016년~2017년 8월)

단위 : 명, (%)

국적 \ 연도	2016년	2017년 10월
총계	2,049,441(100.0)	2,135,049(100.0)
중국	1,016,607(49.3)	1,011,237(47.4)
한국계	627,004(30.6)	673,845(31.6)
베트남	149,384(7.3)	166,956(7.8)
미국	140,222(6.8)	152,343(7.1)
타이	100,860(4.9)	124,657(5.8)
필리핀	56,980(2.8)	61,208(2.8)
우즈베키스탄	54,490(2.7)	62,027(2.9)
캄보디아	45,832(2.2)	47,269(2.2)
인도네시아	47,606(2.3)	43,249(2.0)
러시아(연방)	32,372(1.6)	47,451(2.2)
일본	51,297(2.5)	41,977(1.9)

연도 / 국적	2016년	2017년 10월
몽골	35,206(1.7)	42,754(2.0)
네팔	34,108(1.7)	36,225(1.6)
(타이완)	34,003(1.6)	30,942(1.4)
캐나다	26,107(1.3)	26,219(1.2)
스리랑카	27,650(1.3)	27,067(1.3)
미얀마	22,455(1.1)	24,292(1.1)
방글라데시	15,482(0.8)	15,784(0.7)
(홍콩)	16,728(0.8)	10,884(0.5)
파키스탄	12,639(0.6)	12,740(0.6)
오스트레일리아	13,870(0.7)	9,953(0.4)
인도	10,515(0.5)	11,906(0.5)
영국	7,180(0.4)	7,111(0.3)
뉴질랜드	4,906(0.2)	4,152(0.1)
기타	92,942(4.5)	116,646(5.4)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재구성.

제3장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 영 신

제3장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1.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2017년도 말 현재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범피센터'로 함)는 59개이다. 2015년과 2016년도 2년 동안 전국 '범피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전국 59개의 '범피센터'에서 신규로 접수한 범죄피해자는 2015년도에 11,359명이고, 2016년도에는 11,385명인데, 이 중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2015년도에 97명이고, 2016년도에는 77명으로 집계된다. 전체 범죄피해자 신규 접수인원 중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는 0.8%, 2016년도에는 0.7%이다.

〈표 3-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접수 및 외국인 지원 현황(2015-2016)

구분	신규 접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전체	외국인	합계	상담	상담+추가지원	미상
2015년	11,359 (100.0)	97 (0.8)	97 (100.0)	44 (45.4)	40 (41.2)	13 (13.4)
2016년	11,385 (100.0)	77 (0.7)	77 (100.0)	23 (29.9)	47 (61.0)	7 (9.1)

자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공 자료 재구성.

앞 장에서 체류외국인수가 2016년 이후 우리나라 전국 주민등록인구수의 4%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수인원수는 일반 국민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용률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체류외국인의 연령 구성이 주민등록인구에 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 많은 경제활동인구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은 현저하게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범피센터'를 대상으로 2015년과 2016년도에 지원이 이루어진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표 3-1〉에서와 같이 상담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2015년도에는 40명, 2016년도에는 4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제공한 자료에는 상담만 이루어진 사례와 추가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 그리고 세부 지원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피해자 이름만 명시된 사례가 있는데, 이를 〈표 3-1〉에 정리한 것이다. 〈표 3-1〉에서 상담 사례수와 전체 접수인원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였고, 상담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는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 파악한 사례수를 이용한 것이다. 나머지 미상은 연합회가 제공한 접수 인원과 이 연구를 통해 파악한 지원 인원 및 상담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로서 세부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이다. 일부 집계과정상의 오류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2015년과 2016년도에 전국 범피센터에서 접수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각각 97명과 77명으로 100명을 넘지 않는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만을 받았으며, 상담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15년에 40명, 2016년도에는 47명으로서 전체 외국인 범죄피해자 접수인원 중에서 2015년에는 41%, 2016년도에는 61%가 실질적으로 범죄피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역별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다음의 〈표 3-2〉는 2015년과 2016년에 전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지원한 인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전국 59개의 센터 중에서는 2년 동안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1명 이상 지원한 센터는 모두 31개이며, 나머지 20여 개 센터의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과 2016년도의 2년 동안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지역이 23명(26%), 경기도 및 충청도 지역이 22명(25%), 인천지역이 2명(2%),

울산,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지역이 19명(22%),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이 18명(21%), 강원도 지역이 3명(3%)으로 나타난다. 지난 2년 동안 지원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는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인원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합 계		40 (100.0)	47 (100.0)	87 (100.0)
소 계		14 (35.0)	9 (19.1)	23 (26.4)
서 울	서울 중앙	2	3	5
	서울 동부	2	1	3
	서울 남부	4	2	6
	서울 서부	0	3	3
	서울 북부	6	-	6
소 계		10 (25.0)	12 (25.5)	22 (25.3)
경기·충청	수 원	2	5	7
	성남·광주·하남	-	1	1
	여주·이천·양평	1	1	2
	안산·시흥·광명	3	-	3
	홍 성	1	-	1
	공주·청양	1	1	2
	서 산	2	1	3
	충주·음성	-	3	3
소 계		1 (2.5)	1 (2.5)	2 (2.3)
인 천	인 천	1	1	2
소 계		9 (22.5)	10 (21.3)	19 (21.8)
울산·부산·대구·경상	울 산	2	2	4
	밀양·창녕	-	1	1
	부 산	-	1	1
	대구 경북	5	2	7
	대구 서부	-	1	1
	경 주	2	1	3
	포 항	-	1	1

구 분		2015년	2016년	합 계
	상주·문경·예천	-	1	1
소 계		6 (15.0)	12 (25.5)	18 (20.7)
광 주 전 라	광주 전남	2	4	6
	전남 동부	-	1	1
	해남·완도·진도	2	1	3
	전 주	1	2	3
	군산·익산	1	1	2
	정 읍	-	3	3
소 계		-	3 (6.4)	3 (3.4)
강 원	춘 천	-	1	1
	강 릉	-	1	1
	원주·횡성	-	1	1

제2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특성

1.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2015년과 2016년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동거 가족상태별, 취업상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2년 동안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외국인 범죄피해자 87명 중에서 남자는 42명(48.3%)이고 여자는 44명(51.7%)로서 여자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체류외국인의 성별 분포와 비교해보면, 2016년도에 남자의 비율이 55% 정도이고 여자가 45%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여자의 범죄피해율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37.9%(33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20대가 24.1%(21명), 40대가 16.1%(14명), 50대가 12.6%(11명)를 나타낸다. 10대와 60대의 비율은 각각 3.7%(3명), 5.7%(5명)로 낮게 나타난다. 체류외국인의 연령분포(〈표 2-6〉 참조)를 보면, 2016년도에 10대 이하가 7% 정도이고, 60세 이상이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10대와 60대의 비율이

더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체류외국인의 연령분포에서 20대와 30대의 비율은 각각 25%~30% 정도에서 변동하는데,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30대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동거가족상태를 살펴보면, 동거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48% 정도(42명)이고,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47% 정도(41명)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다.

〈표 3-3〉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 도 (%)
성 별	합 계	87 (100.0)
	남 자	42 (48.3)
	여 자	44 (51.7)
연 령	합 계	87 (100.0)
	10 대	3 (3.4)
	20 대	21 (24.1)
	30 대	33 (37.9)
	40 대	14 (16.1)
	50 대	11 (12.6)
	60대 이상	5 (5.7)
동거 가족상태	합 계	87 (100.0)
	본인 혼자(동거가족 없음)	42 (48.3)
	동거가족 2명 이상	23 (26.4)
	동거가족 1명	18 (20.7)
	미 상	4 (4.6)
취업 상태	합 계	87 (100.0)
	취 업	52 (59.8)
	무 직	31 (35.6)
	미 상	4 (4.6)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상태인 경우가 60%(52명)이고, 직업이 없는 상태가 36%(31명)이고, 미상이 5% 정도이다.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체류 관련 특성 및 국적 분포

지난 2년 동안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의 체류 관련 특성 및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4〉와 같다.

〈표 3-4〉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체류 관련 특성 및 국적 분포

변 인	구 분	빈 도 (%)
외국인 체류상태	합 계	87 (100.0)
	합법 체류	76 (87.4)
	불법 체류	2 (2.3)
	미 상	9 (10.3)
외국인 비자 유형	합 계	87 (100.0)
	노동자	45 (51.7)
	결혼이민	25 (28.7)
	재외동포	6 (6.9)
	기 타	10 (11.5)
	미 상	1 (1.1)
국적 분포	합 계	87 (100.0)
	중 국	35 (40.2)
	베트남	20 (35.6)
	캄보디아	5 (5.7)
	우즈베키스탄	4 (4.6)
	몽 골	3 (3.4)
	스리랑카	3 (3.4)
	태 국	3 (3.4)
	미 국	2 (2.3)
	일 본	2 (2.3)
	기타 국적	7 (8.0)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합법체류 여부를 살펴보면, 합법체류자가 87%(76명)이고, 불법체류로 확인된 경우가 2%(2명)이고, 합법체류 여부가 확인되지 못한 경우가 10%(9명) 정도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은 살인과 살인 미수로 강력범죄의 피해자로 드러났으며, 각각의 사례는 〈표 3-5〉에서와 같이 '범피센터'의 심의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받았다. 살인범죄의 피해자

가 된 사례에서는 장례비 및 시신해외운송비가 지원되었으며, 살인미수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임시숙소(여관)의 비용으로 생계비 80만원이 지원되었다. 실무적으로 '범죄센터'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범죄피해가 확실하고 피해자의 상황이 매우 열악할 경우 불법체류외국인의 경우에도 센터 자체의 자금을 활용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 및 지원 내용

피해범죄 유형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살 인	〈센터 자체 지원〉 ① 장례비 및 해외운송비 430 만원 ② 주한태국대사관 측에 판결결과 전달	장례 및 사체보관 : 50 만원 방부 및 운송 : 200 만원 항공료 및 입관 : 180 만원
살인미수	〈센터 자체 지원〉 ① 생계비 80 만원 지원	임시숙소(여관)비용으로 지급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비자상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인 경우가 52%(45명), 결혼이주가 29%(25명), 재외동포가 7%(6명)이고, 앞의 세 가지 범주 이외에 속하는 경우가 12%(10명) 정도로 나타난다.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 자료와 비교해보면 결혼이주자의 비율이 다른 외국인 체류자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10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54,755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2,135,049명의 7.2% 수준인데,[34] 범피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지원을 받은 결혼이주자는 29%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체류외국인 중에서 결혼이주자들이 다른 외국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고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이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의 범죄피해율이 높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35]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이 40.2%(35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베트남이 35.6%(20명)로 두 번째를 차지한다. 이외에 캄보디아가 5.7%(5명), 우즈베키스탄이 4.6%(4명)를 차지하며, 몽골, 스리랑카, 태국이 각각 3.4%(3명)를 차지

3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14면, 27면 참조.
35)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는 2017년 10월 현재 전체가 154,755명인데, 이 중에서 남자가 25,012(16.2%)이고, 여자가 129.742명(83.8%)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7년 10월: 27).

한다. 미국과 일본 국적의 범죄피해자는 각각 2명씩이었다. 그 밖에 7개 국적에서 각각 1명씩 범죄피해자가 있었다.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은 외국인범죄피해자의 국적 분포는 체류외국인의 국적 분포와 비교하여(〈표 2-7〉 참조)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전체 체류외국인 중에서 최근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8% 정도인데,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베트남 국적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범피센터 지원 대상 외국인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를 보면, 〈표 3-6〉과 같이 전체 25명 중에서 베트남 국적인 경우가 1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통상 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중국 국적(한국계 포함)이 베트남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중국 국적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하면 베트남 국적 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36]

〈표 3-6〉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대상 결혼이민자의 국적별·성별 분포

구 분		빈 도 (%)
결혼이민자의 국적 분포	합 계	25 (100.0)
	베트남	13 (52.0)
	중 국	5 (20.0)
	필리핀	2 (8.0)
	몽 골	1 (4.0)
	캄보디아	1 (4.0)
	러시아	1 (4.0)
	영국	1 (4.0)
결혼이민자의 성별 분포	합 계	25 (100.0)
	남 자	3 (12.0)
	여 자	22 (88.0)

36)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체류현황 참조(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27면).

제3절 외국인 범죄피해의 가해자 관련 특성

1.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7〉과 같이 나타난다. 〈표 3-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범죄피해의 가해자는 크게 네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가해자가 이전에 피해자와 모르는 관계인 경우는 32%(28명)이며, 나머지 68%(59명)은 범죄피해 이전에 알고 있는 관계이다. 범죄피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일반 국민 대상 범죄피해조사에서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폭력범죄피해 전체 56건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던 경우는 30건으로 그 비중은 53.6%이다"(최수형 외, 2014: 146).[37]

〈표 3-7〉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변 인	구 분	빈 도 (%)
가해자와의 관계	합 계	87 (100.0)
	남 편	22 (25.3)
	직장 관련 (상사, 동료, 고객 등)	18 (20.7)
	동거인(전애인 포함)	7 (8.0)
	모르는 사람	28 (32.2)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남편이 25%(2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직장에서 알게 된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고객인 경우가 21%(18명)이다. 이외에 범죄발생 당시 동거 상태에 있거나 이전에 동거했던 경우가 8%를 차지한다. 가해자가 남편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범죄피해자

37) 전국범죄피해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범죄피해율 3.7%(사건보고 기준으로14,976명 중에서 555건, 혹은 44,039,786명 중 1,612,701건으로 추정)중에서 폭력범죄의 피해율은 0.4%임(최수형 외, 2014: 2-3).

중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많기 때문이다.

2.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외국인 범죄피해 가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가해자의 국적, 성별, 연령별 분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3-8〉에서와 같이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대상 사례 중에서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는 75%(65명)이고, 가해자자 외국인인 경우는 23%(20명)로 나타난다. 나머지 2명은 가해자의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표 3-8〉 외국인 범죄피해 가해자의 국적·성별·연령별 분포

변 인	구 분	빈 도 (%)
국 적	합 계	87 (100.0)
	한국인	65 (74.7)
	외국인	20 (23.0)
	미 상	2 (2.3)
성 별	합 계	87 (100.0)
	남 자	77 (88.5)
	여 자	2 (2.3)
	미 상	8 (9.2)
연 령	합 계	87 (100.0)
	10 대	1 (1.1)
	20 대	12 (13.8)
	30 대	13 (14.9)
	40 대	10 (11.5)
	50 대	16 (18.4)
	60대 이상	4 (4.6)
	미 상	31 (35.6)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지원은 공식적으로 가해자가 내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피센터에서 지원한 사례에도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23%(20명) 포함되고 있다. 2016년도에 실시된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조사연구(최영신 외, 2016)의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폭력피해에서 가해자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는

63%(55명), 피해외국인의 본국 출신인 경우가 26%(23명), 제3의 국가인 경우가 6%(3명), 미상이 3%(3명) 정도로 나타난다(최영신 외, 2016: 119). 외국인 폭력피해와 전체 범죄피해에서 가해자의 국적 비율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범피센터에서 지원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는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의 지원 비율이 실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발생 비율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차원의 범죄피해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의 외국인 피해자에게 범피센터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가 88.5%(77명), 여자가 2.3%(2명). 미상이 9.2%(8명)로 나타난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가해자의 연령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36%정도(31명)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가해자의 연령이 확인된 경우로는 50대가 18.4%(16명)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대(14.9%), 20대(13.8%), 40대(11.5%)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제4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 관련 특성

1. 피해범죄의 유형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 관련 특성 중에서 먼저 피해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9〉와 같다. 2015년과 2016년도에 범피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87명의 범죄피해자들이 보고한 범죄피해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 및 상해'로서 전체 사례의 54%(47명) 정도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이 20.7%(18명) 정도이고, 성폭력이 8.0%(7명), 살인이 5.7%(5명), 살인미수가 6.9%(6명)를 차지한다. 이외에 방화와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각각 1명, 3명이다.

〈표 3-9〉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 범죄유형

범죄 유형	명 (%)
합 계	87 (100.0)
살 인	5 (5.7)
살인미수	6 (6.9)
성 폭 력	7 (8.0)
가정폭력	18 (20.7)
폭행 및 상해(특수 포함)	47 (54.0)
방 화	1 (1.1)
재산범죄	3 (3.4)

다음의 〈표 3-10〉은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비자상태별 피해범죄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0〉을 보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비자상태별로 피해범죄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폭행 및 상해'의 비율이 69%(31명)로서 매우 높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살인 및 살인 미수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결혼이주자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64%(16명)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폭행 및 상해가 20%(5명) 정도이다. 이외에 다른 범죄 유형은 발생비율이 낮은 편이다.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 사례가 6명으로 해당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데, 이들 중에서 5명이 '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이다.

〈표 3-10〉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비자상태별 피해 범죄유형

단위: 명(%)

구 분	합 계 (%)	이주 노동자 (%)	결혼이주 (%)	재외동포 (%)	기 타 (%)	미 상 (%)	X^2
합계	87 (100.0)	45 (100.0)	25 (100.0)	6 (100.0)	7 (100.0)	4 (100.0)	65.908***
살인	5 (5.7)	4 (8.9)	1 (4.0)	-	-	-	
살인미수	6 (6.9)	3 (6.7)	1 (4.0)	1 (16.7)	-	1 (25.0)	
성폭력	7 (8.0)	2 (4.4)	1 (4.0)	-	2 (28.6)	2 (50.0)	
가정폭력	18 (20.7)	2 (4.4)	16 (64.0)	-	-	-	

구 분	합 계 (%)	이주 노동자 (%)	결혼이주 (%)	재외동포 (%)	기 타 (%)	미 상 (%)	X^2
폭행 및 상해 (특수 포함)	47 (54.0)	31 (68.9)	5 (20.0)	5 (83.3)	5 (71.4)	1 (25.0)	
방화	1 (1.1)	-	1 (4.0)	-	-	-	
재산범죄	3 (3.4)	3 (6.7)	-	-	-	-	

* : p<0.05, ** : p<0.01, *** : p<0.001

2. 피해정도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심각한 수준에 따라 사망, 장해·중상해, 상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1〉과 같다. 조사된 전체 외국인 범죄피해자 87명 중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5명(5.7%)이며, 장해·중상해인 경우는 7명(8.0%), 상해인 경우는 72명(82.8%)이다. 〈표 3-12〉는 외국인의 비자상태별 피해정도를 정리한 것인데, 사례수가 적어서 외국인의 비자상태별 피해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사망, 장해·중상해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표 3-11〉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 정도

구 분	명 (%)
합 계	87 (100.0)
사 망	5 (5.7)
장해 · 중장해	7 (8.0)
상 해	72 (82.8)
재산범죄	2 (2.3)
기 타	1 (1.1)

〈표 3-12〉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비자 상태별 피해정도

단위: 명(%)

구 분	합 계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	재외동포	기 타	미 상	X^2
합 계	87 (100.0)	45 (100.0)	25 (100.0)	6 (100.0)	7 (100.0)	4 (100.0)	11.059
사 망	5 (5.7)	4 (8.9)	1 (4.0)	-	-	-	
장해/ 중장해	7 (8.0)	5 (11.1)	-	1 (16.7)	-	1 (25.0)	
상 해	72 (82.8)	33 (73.3)	24 (96.0)	5 (83.3)	7 (100.0)	3 (75.0)	
재 산 범 죄	3 (3.4)	3 (6.7)	-	-	-	-	

* : p<0.05, ** : p<0.01, *** : p<0.001

3. 심리치료 관련 특성

2015년과 2016년도에 범피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87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던 집단과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의 〈표 3-13〉과 같다.

전체 87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던 경우는 11명으로 13%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76명은 심리치료를 받지 않았다.

심리치료를 받았던 집단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11명 모두가 여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명(4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20대가 2명(18%), 10대가 2명(18%), 40대와 50대가 각각 1명씩으로 심리치료 대상자는 전 연령층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리치료를 받은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성폭력이 5명(46%)으로 가장 많고, 가정폭력이 3명(27%), 폭행 및 상해가 2명(18%), 살인미수가 1명(9%)이다. 심리치료를 받았던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에는 성폭력 범죄와 가정폭력 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치료를 받은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살펴보면, 상해가 10명(91%)이고, 장해 · 중장해가 1명으로 나타난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신체적 피해정도와는 별도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리치료를 받은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취업상태를 보면, 무직인 경우가 7명(64%)이며, 취업 상태인 경우가 4명(37%)이다.

심리치료 지원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이 3명(27%), 베트남, 몽골, 태국이 각각 2명(18%)씩이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1명씩인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의 비자상태를 보면, 결혼이주자인 경우가 5명(46%)으로 가장 많고, 이주노동자가 2명(18%), 재외동포가 1명, 기타와 미상인 경우가 3명으로 나타난다. 결혼이주자인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이고,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성폭력의 피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요컨대,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 여부는 범죄피해자의 성별, 피해범죄 유형, 피해자의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치료를 많이 받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다른 범죄 유형 피해자에 비하여 심리치료를 많이 받으며,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국적의 경우에 심리치료를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 여부별 특성 비교

변수	구 분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 여부			
		합 계	유(%)	무(%)	X^2
성별	합 계	87(100.0)	11(12.6)	76(87.4)	11.753**
	남 자	42(48.3)	-	42(55.3)	
	여 자	45(51.7)	11(100.0)	34(44.7)	
연령	합 계	87(100.0)	11(12.6)	76(87.4)	9.533
	10 대	3(3.4)	2(18.2)	1(1.3)	
	20 대	21(24.1)	2(18.2)	19(25.0)	
	30 대	33(37.9)	5(45.5)	28(36.8)	
	40 대	14(16.1)	1(9.1)	13(17.1)	
	50 대	11(12.6)	1(9.1)	10(13.2)	
	60대 이상	5(5.7)	-	5(6.6)	
피해범죄 유형	합 계	87(100.0)	11(12.6)	76(87.4)	26.549***
	살 인	5(5.7)	-	5(6.6)	
	살인미수	6(6.9)	1(9.1)	5(6.6)	
	성폭력	7(8.0)	5(45.5)	2(2.6)	

변수	구 분	범죄피해자의 심리치료 여부			
		합 계	유(%)	무(%)	X^2
	가정폭력	18(20.7)	3(27.3)	15(19.7)	
	폭행 및 상해 (특수포함)	47(54.0)	2(18.2)	45(59.2)	
	방화	1(1.1)	-	1(1.3)	
	재산범죄	3(3.4)	-	3(3.9)	
피해정도	합 계	87(100.0)	11(12.6)	76(87.4)	
	사망	5(5.7)	-	5(6.6)	
	상해	72(82.8)	10(90.9)	62(81.6)	1.276
	장해/중장해	7(8.0)	1(9.1)	6(7.9)	
	재산범죄	3(3.4)	-	3(3.9)	
취업상태	합계	87(100.0)	11(12.6)	76(87.4)	
	무직	31(35.6)	7(63.6)	24(31.6)	
	취업	52(59.8)	4(36.4)	48(63.2)	4.505
	미상	4(4.6)	-	4(5.3)	
피해자 국적	합계	87(100.0)	11(12.6)	76(87.4)	
	중국	35(40.2)	3(27.3)	32(42.1)	
	베트남	20(23.0)	2(18.2)	18(23.7)	
	캄보디아	5(5.7)	-	5(6.6)	
	우즈베키스탄	4(4.6)	-	4(5.3)	
	몽골	3(3.4)	2(18.2)	1(1.3)	
	스리랑카	3(3.4)	-	3(3.9)	24.744**
	태국	3(3.4)	2(18.2)	1(1.3)	
	미국	2(2.3)	1(9.1)	1(1.3)	
	필리핀	3(3.4)	-	3(3.9)	
	일본	2(2.3)	1(9.1)	1(1.3)	
	기타국적	7(8.0)	-	7(9.2)	
외국인 비자상태	합계	87(100.0)	11(12.6)	76(87.4)	
	노동자	45(51.7)	2(18.2)	43(56.6)	
	결혼이주	25(28.7)	5(45.5)	20(26.3)	
	재외동포	6(6.9)	1(9.1)	5(6.6)	9.123
	기타	7(8.0)	1(9.1)	6(7.9)	
	미상	4(4.6)	2(18.2)	2(2.6)	

* : p<0.05, ** : p<0.01, *** : p<0.001

제5절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1.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의뢰처

〈표 3-14〉는 '범피센터'에 범죄피해 지원 신청을 한 신청자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 지원 신청자와 관계를 살펴보면, 〈표 3-14〉와 같이 범죄피해자 본인인 경우가 76명(87%)으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가족이 10명(12%), 친구가 1명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신청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4〉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신청자의 특성

변 인	구 분	명 (%)
피해자와의 관계	합 계	87 (100.0)
	본 인	76 (87.4)
	가 족	10 (11.5)
	친 구	1 (1.1)

〈표 3-15〉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 의뢰처

구 분		명 (%)
합 계		87 (100.0)
본 인		9 (10.3)
검 찰		7 (8.0)
경 찰		59 (62.8)
기 타	다문화지원센터 (2)	8 (9.2)
	여성의 전화 (2)	
	YMCA (1)	
	가정폭력피해 외국인지원센터 (1)	
	사회복지센터 (1)	
	여성민우회 (1)	
미 상		4 (4.6)

〈표 3-15〉는 이 연구에서 조사된 87개의 사례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의뢰처가 어디인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15〉를 살펴보면, 범죄피해 의뢰처가 경찰인 경우가 59명(63%)으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외에 본인인 경우가 9명(10%), 검찰이 7명(8%)이며, 기타 다른 기관이 8명(9%)을 차지한다. 기타 다른 기관으로는 다문화지원센터,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피해외국인지원센터 등 주로 이주여성 대상 여성폭력과 관련된 지원 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2.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 내용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87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범죄피해자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단지 8명(9%)에 불과하며 나머지 91%의 지원 사례는 다른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6〉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여부

구 분	빈 도 (%)
합 계	87(100.0)
있 음	8(9.2)
없 음	79(90.8)

〈표 3-17〉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세부 내용

범죄유형	외국인 비자상태	피해정도	지원내용	센터 자체 지원 여부
살 인	합법체류	사 망	① 장례비 지원	있음
성폭력	합법체류	상 해	① 생계비 300만	있음
가정폭력	합법체류	상 해	① 생계비 180만	있음
	합법체류	상 해	① 긴급생계비 250만	있음
폭행 및 상해 (특수포함)	합법체류	상 해	① 치료비 860만, ② 생계비 150만	있음
	합법체류	상 해	① 치료비 570만	없음
	합법체류	상 해	① 생계비 660 만원	있음
	합법체류	장해/ 중장해	① 치료비, ② 생계비 (구체적 금액에 대한 정보 없음)	있음

〈표 3-17〉은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을 받은 8명의 범죄피해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합법체류자로서 범죄유형은 살인범죄피해자가 1명, 성폭력 피해자가 1명, 가정폭력 피해자가 2명, 폭행 및 상해 범죄피해자가 4명이며, 피해의 정도로는 사망이 1명이고, 장해·중장해가 1명, 나머지는 6명은 상해이다. 살인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장례비가 지원되었으며,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혹은 긴급생계비가, 그리고 폭행 및 상해 범죄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생계비가 지원되었다. 〈표 3-17〉에서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 사례의 경우 상해 진단이 5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치료비 액수가 860만원, 570만원 등 범피센터 지원 치료비에 비하여 매우 큰 편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검찰의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을 받은 8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들 중에는 1명을 제외하고 7명이 모두 검찰청을 통한 지원 이외에 '범피센터'의 자체 지원을 받았다는 점이다.

요컨대, 2015년과 2016년도에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죄피해자기금을 지원받은 사례는 불과 8개 사례에 불과하다.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한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은 상해진단이 5주 이상인 사례로서 치료비 액수가 큰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전체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지극히 제한된 사례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범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한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범피센터'의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내용

2015년과 2016년도에 전국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87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범피센터'의 자체 지원을 받은 경우는 84명으로 전체 사례의 97%에 해당하고, 3명의 사례는 범피지원센터의 자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이다. 3명의 사례 중에서 1명은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비 57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명의 사례는 가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외국인이 가해자인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지역별 '범피센터'별로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가 다르게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센터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지 않기도 하고, 일부 센터에서는 지자체 보조금이나 센터 자체의 자금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표 3-1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심의를 통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여부

지원 여부	명 (%)
합 계	87(100.0)
있 음	84(96.6)
없 음	3(3.4)

〈표 3-19〉는 '범피센터'에서 84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게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한 세부 내역을 지원내용별로 정리한 것이다. 84명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46명(55%)이며 평균 지원액수는 102만원 정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임시숙소비나 난방비 등의 지원금액을 긴급생계비에 포함시켰다.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4명이고 평균 지원금은 227만원이다. 학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2명이며, 평균 액수는 170만원이다. 생필품의 경우에는 7명이 지원받았으며 평균 지원액수는 43만원 정도이다. 이외에 김치, 쌀, 가전제품, 명절 차례상, 음식 등이 현물로 지원되었다.

〈표 3-19〉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체 심의를 통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내역

분 류	지원 내용	명 (%)	1인당 평균 지원금액	비 고
경제적 지원	긴급생계비	46(54.8)	102만원	임시숙소비, 난방비 등 포함
	장례비	4(4.8)	227만원	
	학자금	2(2.4)	170만원	
	생필품 지원	7(8.3)	43만원	물품 지원 포함
	기 타	22(26.2)	해당 물품	김치, 쌀, 가전제품, 명절 차례상 음식 지원 등
의료 지원	의료비	49(58.3)	128만원	
	간병비 및 치료부대 비용	2(2.4)	75만원	

분 류	지원 내용	명 (%)	1인당 평균 지원금액	비 고
법률지원		7(8.3)	법정 모니터링	판결 결과 피해자 자국 송부 등
복지지원		1(1.2)	-	쉼터 연계
신변보호		1(1.2)	-	
사례수		84명		

의료지원은 의료비 지원과 '간병비 및 치료부대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49명(58%)이고, 평균 지원금액은 128만원이다.

4. 범죄피해정도와 외국인피해자 지원 상황

이 연구에서 조사된 87건의 사례 중에서 범죄피해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3-20〉은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중장해에 이른 사례의 피해범죄유형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 동안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된 외국인 범죄피해자 87명 중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5명이며, 모두 살인범죄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장해·중장해에 이른 경우는 7명이고, 해당 피해범죄유형은 살인미수가 5명, 성폭력이 1명, 폭행 및 상해가 1명이다.

〈표 3-20〉 피해정도가 심각한 외국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세부 내역

피해정도	범죄유형	지원 내역
사 망	살 인1	〈센터자체지원〉 ① 장례비 240만원, ② 긴급생계비 300만원 ③ 의료비 2.7만원 〈기타〉 ① 지방자체단체의 피해자 화장 절차 무상 지원
	살 인2	〈센터자체지원〉 ① 장례비 300만원, ② 생계비 120만원
	살 인3	〈센터자체지원〉 ① 장례식장비 89만원, ② 장제비 90만원 ③ 의료비 72만원
	살 인4	**〈검찰청 심의〉** ① 경제적지원 심의회 장례비 추천 〈센터자체지원〉 ① 생계비 총 60만원(3개월 간 매달 20만원)

피해정도	범죄유형	지원 내역
		〈기타〉 ① 2015년 삼성라이온즈 학자금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달 10만원씩 12개월간 120만원 지원 ②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경청소년장학재단 학자금 추천 대상자로 선정하여 매달 10만원 상당의 학자금 및 생필품 지원
	살 인5	〈센터자체지원〉 ① 장례비 및 해외운송 430만워, ② 판결 결과 주한태국 대사관 측에 전달
장해/ 중장해	살인미수1	〈센터자체지원〉 ① 치료비 120만원
	살인미수2	〈센터자체지원〉 ① 치료비 166만원, ② 생계비 40만원
	살인미수3	〈센터자체지원〉 ① 치료비 400만원, ② 생계비 106만원
	살인미수4	〈센터자체지원〉 ① 치료비 561만원
	살인미수5	〈센터자체지원〉 ① 생계비 80만원
	성폭력	〈센터자체지원〉 ① 생계비 30만원
	폭행 및 상해 (특수포함)	**〈검찰청 심의〉** ① 병원비, ② 생계비(구체적 금액 미기재) 〈센터자체지원〉 ① 간병비 연합회로 추천하여 120만원 경제적 지원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사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최소한의 장례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유족이 있는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와 의료비가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개별 센터별로 유족인 자녀에게 소액이나마 학자금 지원을 연계한 경우가 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장해·중장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는 7명인데, 살인미수에 의한 경우가 5명이고, 성폭력 피해자가 1명, 폭행 및 상해 피해자가 1명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치료비와 생계비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병원비 및 간병비가 지원된 사례도 있다.

제6절 소결: '범피센터' 지원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접근성 확대

2015년과 2016년도 전국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접수인원은 각각 97명과 77명으로 100명을 넘지 않는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전화상담이나 방문 상담만을 받았으며, 상담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는 2015년에 40명, 2016년도에는 47명이다. 전체 외국인 범죄피해자 접수인원 중에서 2015년에는 41%, 2016년도에는 61%가 상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범죄피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

전체 '범피센터' 범죄피해자 신규 접수인원 중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는 0.8%, 2016년도에는 0.7%를 차지한다. 체류외국인수는 2016년 이후 우리나라 전국 주민등록인구수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수인원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상태이다. 특히 체류외국인의 연령 구성이 주민등록인구에 비하여 범죄피해 발생이 많은 경제활동인구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률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범피센터'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와 홍보, 통역의 제공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2.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 지원은 공식적으로 가해자가 내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피센터'에서 지원한 사례에도 외국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23%(20명) 포함되고 있다. 2016년도에 실시된 외국인 폭력범죄에 대한 조사연구(최영신 외, 2016)에 따르면, 외국인 폭력피해에서 가해자의 국적이 한국인인 경우는 63%(55명), 피해외국인의 본국 출신인 경우가 26%(23명), 제3의 국가인 경우가 6%(3명), 미상이 3%(3명) 정도로 나타난다(최영신 외, 2016: 119). 외국인 폭력범죄에서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32%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폭력범죄 피해와 전체 범죄피해에서 가해자의 국적 비율이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에 대한 '범피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 비율은 실제 발생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차원의 범죄피해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의 외국인 피해자에게 '범피센터'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

3.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범피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았던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대부분은 합법체류자(87%, 76명) 이지만, 불법체류상태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2명(2%)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피해범죄 유형은 살인과 살인 미수로 강력범죄의 피해자이다. 살인범죄 피해 사례에서는 장례비 및 시신해외운송비를 지원받았으며, 살인미수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임시숙소(여관)의 비용으로 생계비 80만원을 지원받았다. 현행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38]에서는 '경제적 지원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은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범피센터'는 이러한 규정의 한계로 인해 '범피센터' 회원 회비와 같은 기관 자체 자금을 통해 불법체류외국인의 범죄피해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불법체류상태의 외국인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소송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하는 등 국내에 체류해야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절실하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범죄센터'에서는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체 자금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했던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인 경우에는 치료비와 기초생계비 등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38) 대검찰청 예규 제906호(2017. 11. 6. 개정).

4.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고지 및 안내

'범피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조사를 통해 범죄피해 의뢰처는 경찰인 경우가 59명(63%)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막중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고지와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39]에도 '피해자 전담검사 및 지원담당관 지정·운영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 단계 이전에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비율을 고려하면, '범피센터'를 통한 지원 대상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의 가정폭력 피해가 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결혼이주여성 지원 단체나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한 '범피센터'로의 연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은 물론이고 초기 수사단계의 경찰, 이주노동자 상담 지원 단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39) 대검찰청 예규 제777호(2015. 4. 16 개정).

제4장

외국인 범죄피해 사례 분석: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오경석·장다혜

제4장

외국인 범죄피해 사례 분석: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제1절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사례 분석

1. 외국인 이주노동자 사례의 개요

외국인 이주노동자 범죄 피해자 사례 조사를 통해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기타의 자원을 통해 피해의 일정 부분이나마 지원받는 범죄 피해자 외국인의 규모는 매우 작았다. 이것은 외국인들의 경우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의 접근성 자체가 매우 취약함을 뜻한다.

둘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외국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수사기관이나 외국인 상담 및 지원 기관 등의 종사자들의 인지도도 매우 낮았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다.

셋째,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경우 그들이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의 불안정성,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법기관의 이용자체를 기피하려는 정서가 작동했다.

이러한 몇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전체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범죄피해구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번 사례 조사는 향후 제도 개선이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인증 요건 완화로 인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의 접근성 제고, 인터페이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외국인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사법제도의 공정함에 대한 정례적 교육을 통한 외국인과 사법제도와의 거리감 축소 등의 방향에서

모색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하에서는 사례조사를 통해 수집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피해 사례의 몇 가지 특징들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사례 조사에는 외국인 남성 피해자 9건과 여성피해자 5건(F5, F6, F7, F11, F14)이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남성 피해자 1분과는 직접 인터뷰를 했고, 나머지는 한국인 관계자와 상담일지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부는 인터뷰 없이 상담사례만을 인용한 경우도 있다.

〈표 4-1〉 외국인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사례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련 특성

피해자	범죄피해		피해자 특징			가해자 특징			피해자 지원 내용
	범죄 유형	피해 내용	국적/ 체류자격	당시 직업	현재 상황	관계	형사 단계	국적/ 체류자격	
F1	상해	복부 상해	네팔/E9	노동자	미확인	동료 노동자	집행유예/ 강제추방	외국인	치료비 일부
F2	상해	갈비뼈 골절	우즈베키스탄/H2	노동자	미확인	사적 관계	징역 1년	외국인/ 미확인	-
F3	상해	골절	중국/H2	노동자	미확인	낯선 사람	경찰입건	외국인 (미등록)	치료비 감액
F4	상해	골절	중국/H2	노동자	미확인	불상자	수사중	외국인/ 미확인	보험으로 치료비 일부 부담
F5	폭행	-	미상/ 미등록	마사지사	미확인	사용자	신고	한국인	-
F6	상해	머리 부상	베트남/ 미등록	전업주부	미확인	낯선 사람	주변인 신고	한국인	-
F7	절도	지갑, 여권 분실	베트남/ 미등록	미상	미확인	낯선 사람	신고 (거부)	미상	-
F8	상해	코뼈 골절	우즈베키스탄/H2	노동자	미확인	낯선 사람	소재지 불명으로 기소중지	외국인/ 미확인	-
F9	상해	골절	중국/F4	노동자	쉼터	낯선 사람	징역 8월	한국인	입원비, 수술비, 생활비
F10	무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	가나/ 난민 신청자	노동자	출국	사용자		한국인	-
F11	폭행/ 무고	정신적 피해	중국/ 미확인	국제결혼 후 이혼	미확인	전남편	검찰송치	한국인	-

피해자	범죄피해		피해자 특징			가해자 특징			피해자 지원 내용
	범죄 유형	피해 내용	국적/ 체류자격	당시 직업	현재 상황	관계	형사 단계	국적/ 체류자격	
F12	폭행	경제적, 심리적 피해	미얀마/ E9	노동자	미확인	사용자	기소유예	한국인	-
F13	상해	복부 상해	베트남/ E9	선원 노동자	G1으로 국내체류	동료 노동자	징역3년	한국인	입원비 수술비 일부
F14	성폭행 상해	안면 골절	몽골/ 관광 비자	노래방도우미	쉼터	손님	구속	한국인	치료비, 생활비, 상담

2. 외국인 범죄행위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 배제의 문제

위의 사례 가운데 남성 외국인 피해자인 경우는 9건이다. 여성 피해자는 5건(F5, F6, F7, F11, F14)이다.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5건(F1, F2, F3, F4, F8)이고 나머지 9건은 한국인이 가해자이다.

외국인 가해자가 미등록(불법)체류자인 경우는 1건(F3)이고 피해자가 미등록(불법) 체류자인 경우는 3건(F5, F6, F7)이다.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의해 치료비의 일부나마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 역시 3건에 불과하지만,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 노출의 위협으로 수사를 기피한 세 가지 사례를 제외한다면,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보다는 지원받을 확률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사례 1-2-1〉[40] 네팔인 가해자에 의한 상해피해 치료비 지급의 어려움
>
> F1은 네팔 이주노동자A씨가 같은 나라 출신 노동자 B씨와 기숙사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흉기로 복부를 찌른 사건임. 피해자 B씨의 수술 및 치료비용은 약 1,500만원 발생함. 사건 직후 체포된 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강제추방됨. 피해자인 B씨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음. 가해자가 네팔인이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료비를 지원 받지 못했다고 함(아산외국인노동자 센터 제공).

40) 〈사례 1-2-1〉의 사례번호는 제1절 2.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사례 1-2-2〉 고려인 가해자에 의한 상해피해 치료비 지급의 어려움

F2는 고려인 B와 B의 친구들이 고려인 K를 집단 폭행하여 갈비뼈가 골절되고 내장이 파열되는 상해피해를 입은 사건임. B는 징역 1년을 선고받음. 이후 화성보호소에서 2년간 구금되었다 강제추방됨. 폭행에 가담한 B의 친구들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도주함. K는 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고려인지원센터 제공).

〈사례 1-2-3〉 미등록(불법)체류 가해자에 의한 상해피해 치료비 지급의 어려움

F3은 중국동포 근로자 A가 핸드폰 가게에서 우연히 마주친 우즈베키스탄 미등록체류자 B와 사소한 시비 끝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발목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당한 사건임. 가해자가 미등록체류자로서 경찰에서는 조사 직후 가해자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 강제퇴거 절차에 돌입하였으나, 지원단체의 요청으로 가해자에 대한 출국 일시 보류가 결정되고 경찰의 재조사가 이루어짐. 지원단체가 관할 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에 준하는 치료비 감액을 받게 됨(외국인의 경우 국가 간에 상호 보증이 있어야만 범죄피해구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검찰청의 협조로 일부 적용 받을 수 있었음)(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제공).

〈사례 1-2-4〉 신원불상의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상해피해 구조의 어려움

F4는 중국동포 근로자 P씨가 노상에게 신원불상의 외국인에게 폭행당해 갈비뼈, 광대뼈, 턱 등 부위 골절로 수술 및 치료비 5백만원이 발생한 사건임. 폭행당한 지역은 어둡고 CCTV 없는 사각지대라 아직 가해자를 찾지 못한 상태임. 경찰은 같은 시간에 인근 카드사용내역 위주로 조사 중이며 현재 해당 카드사에 용의자의 신분 확인 요청중임. 병원비는 개인보험으로 처리 후 차액 약100만원은 자비로 부담했음(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제공).

외국인이 가해자일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위의 사례를 통해 추론해본다면, 첫째 가해자가 미등록체류자일 경우 강제퇴거 절차가 바로 진행된다는 점, 둘째 가해자가 불상의 외국인일 경우 출신국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은, 가해자의 국적 여부

와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해당되는 어려움일 것이다. 한 경찰서 범죄피해보호담당관은 인터뷰 과정에서, "내국인을 구하다가 다친 중국인이 있었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구조 요청을 했지만, 그곳에서 '법만 들이대는' 바람에 지원받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말해준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가들은 "외국인이 가해자일 경우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에 의해 공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는 일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평가한다.

3. 체류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한 문제 : 통보 의무 면제 제도의 미운영 사례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무원의 미등록 체류사실에 대한 통보의무가 규정되어 있다(제84조). 그러므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외국인 피해자, 형사사건에 대한 증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는 부모 등은 노동부, 경찰, 관공서등을 방문하면 통보 의무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 불법체류자인 경우 범죄피해를 당하여도 신고 내지 고소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지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제3호에서는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면제 대상을 규정하여 범죄피해 구조 내지 인권침해 구제 등 범죄피해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법집행에 있어 통보의무의 면제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일선 경찰 등이 잘 모르고 있거나, 규정상 면제 대상이 되는 범위가 불확실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 범죄피해자라도 단속의 두려움에 국가기관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주여성쉼터 종사자들은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이 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며, 실제 출입국 관련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선의 경찰서에서는 범죄피해자임에도 피해자 조사 중 미등록인 사실을 알게 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계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한다.

경찰조사 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로 인해 경찰에서 출입국관서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쉼터에 입소한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의 출국여부를 경찰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사례도 있어 미등록 상태인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임에도 자신의 취약한 체류 지위의 문제로 오히려 경찰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 1-3-1〉[41] 미등록(불법) 체류 폭행 피해자의 강제 퇴거에 대한 두려움
F5는 소도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이주 여성이 업소의 체불임금으로 사장과 말다툼하다가 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임. 이후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미등록임을 알고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함. 여성은 조사당일 폭력의 피해자임에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조사를 받으러 가지 못함(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제공).

〈사례 1-3-2〉 미등록(불법) 체류 폭행 피해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
F6은 F-2비자로 입국 후 이혼하였으나 더 이상의 체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미등록이 된 이주 여성이 제노포비아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갑작스런 폭행을 당한 사건임. 이후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신고되고 머리를 여러 번 꿰매야 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출입국으로 알려질까두려워 병원을 옮기고 집도 갑작스럽게 이사해 버리는 등 피해자임에도 숨어버림(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제공).

〈사례 1-3-3〉 미등록(불법) 체류 절도 피해자의 경찰 신고시 어려움
F7은 지갑을 도난당하여 지갑 안에 소지하던 여권도 분실한 베트남 이주여성이 미등록 신분으로 인하여 경찰 신고를 거부당한 경우임.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여권 재발급을 하려고 하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접수증을 요구함.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함(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제공).

4. 형사사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비단 미등록 체류자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를 바 없다. 강제퇴거의 위협,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 등에 의한 우려로 신고를

41) 〈사례 1-3-1〉의 사례번호는 제1절 3.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기피하는 것이다.

어렵게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언어소통의 어려움, 통역의 미비, 소재지 파악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하여 외국인 폭행 가해자 가운데 일부는 합의를 약속하여 각서 등을 작성, 수사를 모면한 후 그냥 도주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외국인지원기관들에 따르면 가해자가 도주해버리는 경우 수사 기관의 추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사례 1-4-1〉[42] 외국인 가해자 도주시 경찰 대응의 어려움

F8은 2016년 초에 발생한 고려인에 의한 고려인 폭행 사건임. 피해자는 뼈 골절로 코가 내려앉는 상해를 당함. 수술비 및 치료비 4백만원 발생. 가해자는 치료비 부담 각서를 작성하고 상황을 모면한 후 도주함. 경찰에 신고했으나 소재지 불분명으로 기소중지 및 출국금지 조치 내리는 것으로 끝남. 이처럼 외국인 가해자가 도주하는 경우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임(고려인지원센터 제공).

형사사법기관이 외국인 가해자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은 외국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능동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이다. 일부 한국인 가해자들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사법 제도에의 취약한 접근성을 악용하여, 악의적인 '묻지마 고소'를 남용하기도 한다.

〈사례 1-4-2〉 폭행 피해 외국인이 폭행 가해자로 고소당하는 경우

F9는 재외동포비자(F4) K씨가 노상에서 묻지마 식 무차별 폭행 피해를 당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폭행피의자로 고소당했다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판결을 받은 사건임. K씨는 2015년 8월 서울역 앞 노상 공원에서 휴식 중, 한국인 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함. 한국인 김**씨는 "이 **놈의 새끼" 등 욕을 해가며, 영문도 모르는 김씨에게 다가와 쓰러뜨린 후 손을 짓밟음. 가까스로 빠져나와 도주하는 김씨를 추적, 뒤에서 덮쳐 김씨를 깔아뭉개고, "눈깔을 빼버리겠다" 는 등의 폭언과 함께

42) 〈사례 1-4-1〉의 사례번호는 제1절 4.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2차 폭행을 가함. 사건을 목격한 행인 가운데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면서 폭행은 멈춤. 곧바로 119가 출동 병원으로 이송된 K씨는 '우 견관절 상완골 골절 및 탈구' 진단을 받고 한 달 간 입원, 수술치료를 받음. 총 치료비 860만원 발생. 2016년 2차로 '우측 상완골 내고정물 제거술 및 우측 견관절 수동적 관절운동술' 받음. 총치료비 5백만원 발생. 가해자 김씨는 K씨를 쌍방폭행으로 고소함. 수사과정에서 K씨는 수사관으로부터 "변명한다" 등의 폭언을 들음. 최종적으로 김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음. K씨는 불기소 처분됨. 검찰의 범죄피해자구조금지원제도로부터 치료비 전액과 3달치 생활비 150만원을 지원받음. 그러나 사건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전혀 일상생활에 복구하지 못하고, 쉼터를 전전하고 있는 실정임(피해자 K씨 인터뷰).

〈사례 1-4-3〉 외국인 산재피해자가 절도범으로 무고당한 경우

F10은 가나 난민신청자 I씨가 사용자측과 산재인정 여부를 놓고 다투던 중 사용자측에서 I씨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 I씨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2016년 1월 부천 지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임. I씨는 자동차해체산업체에서 근무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은 후, 산재보험신청을 위해 회사의 동의를 구함. 보험처리에 거부한 사측에서는 산재보험신청 취하서에 사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함. I씨가 체불임금만 받고 사인을 거부하고 나오자 바로 경찰에 절도범으로 신고함. 85만원 절도 강탈 현행범으로 체포된 I씨는 수갑 채워진 채 밤샘 조사를 받음. 이 사건으로 I씨는 13일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음. 무죄 판결 후 가나로 출국함(경기글로벌센터 제공).

〈사례 1-4-4〉 폭행 및 성추행 가해자 전남편으로부터 절도범으로 고소당한 경우

F11은 중국인 결혼이민자 A씨가 가정 폭력 및 자녀 성추행 한국인 남편과 소송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오히려 무단주거침입 절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임. A씨는 이혼 후 한국인 남편은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딸아이와 같이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을 가져가겠다는 허락을 받고 쓰던 물건들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함. A씨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전남편의 성추행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임. A씨는 이혼소송 후에도 지속되어 온 전남편의 협박과 난동으로 신경쇠약, 불안 등의 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순간치매증상까지 보임(경기글로벌센터 제공).

실질적인 무고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은 전무하다. 명백한 폭행 증거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사례 1-4-5〉 무차별 폭행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F12는 미얀마 출신 E9 노동자 M씨가 고용주(의 아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피해 방지를 위해 단행한 사업장 이탈이 빌미가 되어 미등록체류자로 전락, 강제퇴거의 위기에 처했으나,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출국 유예 조치 후 고용변동신고 승인으로 비자 지위를 회복한 사건임. 폭행 사건 후 출입국보호소에 구금되었다 풀려나기까지 10개월이 경과했으나 그 과정에서의 경제적, 심리적 손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함. 폭행 가해자는 동영상 등 증빙 자료에 근거해 고용노동청에 의해 "피신고인의 법률(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범죄 인지 후 수사를 완료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 검찰청으로 송치"됨. 그러나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초범이며 반성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됨(경기글로벌센터 제공).

5. 외국인 피해자의 사법접근성 제한 문제

사례 조사를 통해 외국인 범죄 피해자로서 공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난관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범죄피해자성을 입증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는 관행적으로 '외국인 인권 침해'와 동일시된다.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율의 외부에 있는 '권리구제'의 문제로 전치되는 셈이다.

사례 조사의 과정에서 매년 수만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탁월한 상담전문기관들에 외국인범죄피해 사례를 의뢰했었으나,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알고 있거나 활용해본 적이 있다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외국인이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입증)되었다고 해도, 공적인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자료들을 확보해 지원 요건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지원단체 활동가나 병원 직원, 담당경찰관도 어렵다고 할 정도니, 피해자 트라우마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외국인

피해 당사자가 이 일을 직접 처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범죄피해자 입증의 어려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어려움보다 더욱 본질적인 난관은 아마도 외국인들 대부분이 한국의 사법제도 자체에 취약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외국인들의 사법제도에의 취약한 접근성은 비자 제도, 외국인들의 문화, 그리고 사법기관과의 소통의 문제 등으로 압축해볼 수 있다.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의 사법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지원 제도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외국인 범죄 피해와 그 구조가 단순히 그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에 결정적인 비자 지위의 변경이라는 문제와 어떤 식으로든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례 1-5-1〉[43] 수사 진행 중 피해자 체류자격 만료로 인한 비자 변경

F13은 군산지역 어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베트남 근로자 A씨가 한국인 선원으로부터 칼에 의한 상해를 당한 사건임. 가해자는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임. 치료가 끝났을 때 A씨의 잔여 체류기간은 1개월에 불과했으므로, 범죄피해구조금 및 배상 등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체류자격 변경과 체류기간연장이 불가피했음.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A씨는 기타자격(G-1) 비자를 변경하여 국내 체류 중임(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제공).

〈사례 1-5-2〉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 폭행피해자의 비자 복원

고용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F12 사례의 M씨는 폭행을 피해 불가피하게 사업장 이탈을 하였으나 그 사유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청주출입국보호소에 구금됨. 고용주를 고발하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는 M씨의 출국유예조치 및 고용변동신고 승인을 통한 비자 회복이 선결과제였음. 지원센터의 도움으로 M씨의 비자 지위는 회복됨(경기글로벌센터 제공).

피해자가 미등록 신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기관에의 노출을 두려워해 잠적하거나, 신분입증이 안되어 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앞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바 있다(사례 1-3-1, 1-3-2, 1-3-3).

---

43) 〈사례 1-5-1〉의 사례번호는 제1절 5.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사법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지원 제도 이용을 기피하는 것은 외국인 범죄피해의 구조가 단순히 그 문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에 결정적인 비자 지위의 변경이라는 문제와 어떤 식으로든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법기관에 위임하기보다는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든지,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종의 '대결'과 같은 형식의 자발적인 폭력적 해결책을 용인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의해 고지해주고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에도, "다 끝난 일인데", "사람이 죽고 없는데", "이제 지원받아 무슨 소용이냐"며, 사후적인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의 접근 정도를 제한하는 요소들이다.

〈사례 1-5-3〉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의 신고 기피

"우즈벡 원주민 및 고려인들의 '싸움'에 대한 사고는 한국의 8~90년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시비가 붙으면 굽히면 안되고, 반드시 때려서 이겨야 하고, 맞더라도 경찰을 부르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들의 문화다. 실제로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동생이 신고했다(고려인지원센터 팀장)."

사법기관에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에게 익숙한 언어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의 사법제도 접근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주요한 요인이다. 때때로 무자격 통역자에 의한 진술 및 사실관계의 왜곡이 이루어져,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통역의 미비는 수사관을 비롯한 사법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외국인 범죄를 공정히 처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그에 맞는 처벌과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이다.

〈사례 1-5-4〉 통역의 미비로 인한 외국인 범죄 수사의 어려움

"외국인 범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통역 등의 미비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보호소나 다문화 관련 기관 등 통역이 가능한 이주민 전담 기관으로 인계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외국인범죄 수사관)."

6. 소결: 외국인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지원의 문제점

이번 사례연구를 통해 현행 외국인 범죄 피해 지원 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의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협소한 지원 대상의 범위, 엄격하고 복잡한 인증 요건 등이 중첩되어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의 구조 제도 이용률을 매우 낮게 만든다. 어렵사리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지원 자체가 경제적인 분야에 집중된다는 점이 만족률을 떨어뜨린다.

둘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자체의 인지도가 매우 떨어진다. 사례 조사 과정에서 만나본 외국인과 접촉하는 공공 부문 종사자, 형사 기관 관계자, 민간지원단체 활동가 등 가운데서, 이 제도와 그 이용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범죄 피해 당사는 말할 나위도 없다. 피면접자 대부분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럼 한 번 이용해봐야겠네요.”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셋째, 외국인 범죄피해 당사자들은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사에 참여하는 경우 우려되는 신분과 체류 자격에서의 불이익, 소수 언어 통번역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불공정한 수사의 개연성, 폭력적인 갈등 해소 방식을 관용하는 자국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공권력에 대한 무관심 등이 그 요인이다. 범죄피해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요인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사법 제도 자체에의 거리감을 완화시키려는 조처들이 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례조사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재개념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지원 제도 활용을 꺼리는 데에는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수사와 연동된 비자 제도의 불가피한 변동, 미등록체류자의 보호와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통보의무의 존치, 범죄 행위를 인권침해 행위와 동일시하는 관행, 묻지마 폭행 등과 같은 인종주의적인 행위를 범죄로 특정할 법제의 부재로 인한 인종범죄 수사의 소극성, 자발적인 폭력에 의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정당화하는 외국인들의 고유한 문화, 한국인의 사법권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의 부재, 형사 및 사법기관의 단일언

어 업무 환경(소수 언어 통역의 미비) 등이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의 지원 제도 활용률을 매우 낮게 만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제2절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1.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사례의 개요

제2절에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와의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수집한 이주여성의 20개의 여성폭력 피해사례와 1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사례를 분석한다. 앞서 살펴본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범죄피해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범죄피해의 특성에 더해, 이주 여성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의 특수성에 의해 사법기관 및 관할 기관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또 다른 특성을 보인다. 범죄피해자의 권리실현의 차원에서 외국인 범죄피해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수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이하에서 분석한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사례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사례 분석 시 일반적인 여성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은 체류자격의 차이와 주된 범죄피해 양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7개의 여성이주노동자 사례의 일반특징은 〈표 4-2〉에서, 14개의 결혼이주여성 사례의 일반 특징은 〈표 4-3〉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의 서술에 있어, 앞서 언급한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소와 쉼터와의 전문가 워크샵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고명숙 회장,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이 작성한 발표문과 워크샵에서 진행된 논의를 정리한 녹취록은 주요 쟁점 분석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발표문에 대한 인용은 각 상담소 및 쉼터 종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녹취록에 대한 인용은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병행하였다. 인용시 각 전문가의 이름을 괄호로 병기하였다. 워크샵 발표문을 통해 제공된 각 사례의 피해자는

여성 폭력 피해사례만을 정리하여 아래의 표에서 부여된 사례번호로 대체하였으며, 각 사례에는 해당 사례를 제공한 기관의 이름을 병기하였다.

〈표 4-2〉 여성 이주노동자 범죄피해 사례

피해자	범죄/피해		피해자 특징				가해자 특징		피해자 지원 내용
	범죄 유형	피해 내용	국적/ 체류지위	당시 직업	연령	결혼 상태	관계	형사 단계	
W1	강간미수 치상	안면골 골절 등	몽골/ 관광비자	노래방 도우미	30대	미혼	노래방 손님	구속	입원비 수술비 생계비 쉼터 입소
W2	인신매매/ 성매매강요	심리적 피해	태국/ 단기방문	안마 시술소	미상	미혼	성매매 업주/ 브로커	검찰 송치	쉼터 입소
W3	인신매매/ 성매매강요	심리적 피해	태국/ 단기방문	안마 시술소	미상	미혼	성매매 업주/ 브로커	검찰 송치	쉼터 입소
W4	인신매매/ 성매매강요	심리적 피해	태국/ 단기방문	안마 시술소	30대	미혼	성매매 업주	고소 안함	쉼터 입소 입원비
W5	가정폭력/ 상해	복부 상해 피해	방글라데시/ 가족비자	전업 주부	30대	기혼	남편 (방글라 데시)	고소 포기	
W9	성폭력		/귀화	미상	미상	미상	미상	신고	
W10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심리적 피해	태국/ 미상	안마 시술소	미상	미혼	성매매 업주/ 브로커	경찰 수사	쉼터 입소

〈표 4-3〉 결혼이주여성의 범죄피해 사례

피해자	범죄/피해		피해자 특징					가해자 특징		피해자 지원 내용
	범죄 행위	피해 내용	출신국	체류 지위	입국 년도	연령	자녀 유무	관계	형사 단계	
M1	가폭[44] /폭행		중국	H-2→ F-2→ 귀화	2000	50대		남편		이혼소송 법률지원 쉼터입소
M2	가폭/ 폭행		베트남	F-2-1	2008	20대	딸 (8세)	남편		이혼소송 법률지원

피해자	범죄/피해		피해자 특징					가해자 특징		피해자 지원 내용
	범죄 행위	피해 내용	출신국	체류 지위	입국 년도	연령	자녀 유무	관계	형사 단계	
M3	가폭/폭행		베트남	F-2→귀화	2006	40대	아들(10살)	남편		이혼소송 법률지원 쉼터입소
M4	가폭/폭행		베트남	F-6	2015	20대	딸(4살)	남편		이혼소송 법률지원
M5	가폭/폭행		베트남	F-6	2011	20대	아들(5살)	남편		이혼소송 법률지원
M6	가폭/폭행		필리핀	F-6	2014	20대	아들(2살)	남편		이혼소송 법률지원
M7	강간		베트남	F-2→귀화	1995	30대		집주인(한국인)	고소 후 합의	조사동행 법률지원
M8	주거침입/강제추행		캄보디아	F-2	2007	30대	아들(6살)	이웃	고소 후 합의	법률지원 쉼터입소
M9	가폭/폭행		베트남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남편		쉼터입소
M10	가폭/폭행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남편		쉼터입소
M11	상해	손가락 절단(6주)	중국	방문비자	미상	미상		아는 사람(중국동포)	참고인 중지	쉼터입소
M12	가폭/폭행		캄보디아	미상	미상	미상	아이있음	남편		
M13	가폭/폭행		라오스	미상	미상	미상	미상	남편	신고	법률지원
M14	가폭/폭행		캄보디아	F-2	2012	32	아들(3살)	남편		법률지원(쉼터) 이혼소송 비용 지원(범피센터) 생계비 지원(범피센터)

44) 가정폭력.

2.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 양상 및 특징

가.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 사례

결혼이주여성의 주된 범죄 피해는 가정폭력 피해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약 69.1%가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등의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통제를 제외한 부부폭력 경험도 4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45] 실제 이주여성관련 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범죄피해사례도 주로 가정폭력 피해에 집중되어 있다. 가정폭력의 내용은 주로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통제와 방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한국어에 취약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남편이나 시부모의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대응을 하거나 남편을 떠나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이혼을 전제로 경제적 착취를 시도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경제적 착취의 범위는 결혼이주여성의 부모에게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주여성이 가지는 자원의 부족으로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형사고소보다는 상담소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이혼소송으로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 2-2-가-1〉[46]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경제적 착취

사례M2는 2008년도에 입국하여 남편과 같이 살면서 경제문제로 부부싸움이 많았음. 남편이 항상 사례M2가 번 돈을 빼앗아가려고 하며 생활비를 내라고 했고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사례M2에게 돈을 벌고 오라고 함. 그리고 한국에 와계시는 장모님과 같이 살지 않지만 장모님이 일해서 번 돈을 빌려달라고 함. 돈을 안 주는 이유로 남편이 사례M2를 때리며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음. 사례M2가 집에서 나갔을 때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못했고 남편은 아이를 못 만나게 했음. 사례M2가 돈밖에 모르는 상대방과 살기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했음(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

45)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제2부, 547쪽: 강혜숙, 이주여성 범죄피해 실태와 쟁점 워크샵 발표문, 1쪽 재인용.

46) 〈사례 2-2-가-1〉의 사례번호는 제2절 2. 가.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사례 2-2-가-2〉 쉼터를 통한 가정폭력 피해 구제

사례M3이 2006년 한국에 입국해서 남편과 연세가 많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아들이랑 같이 살았음.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주변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곤 했음. 특히 사례M3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10개월 때부터 남편은 술을 더 많이 먹고 어느 날 술집에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살해해서 교도소에 가게 되었음. 5년 후 교도소에서 나온 남편이 집에 와서 같이 살았으며 술은 예전처럼 계속 먹었고 사례M3를 때렸고 죽인다고 협박했음. 사례M3은 남편과 불안하게 살았고 여러 번 쉼터에 입소했다가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위해서 남편을 믿으며 용서해서 다시 집에 들어갔음.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2016년 5월 경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음(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사례 2-2-가-3〉 이혼을 전제로 한 경제적 착취와 가정폭력

사례M4는 2015년 말 소개로 남편을 만나 동거하며 아이를 가짐. 아이가 생긴 후 남편이 술을 많이 먹기 시작했고 임신하고 있는 사례M4를 더 많이 때렸음. 그 당시 사례M4는 너무 무섭고 아직 혼인을 신고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그냥 헤어지자고 했더니 남편은 잘못했다며 사과해서 사례M4가 약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혼인을 신고했음. 살면서 상대방이 밖에서 술을 많이 먹고 잘 노느라고 가정을 무관심했고 집에서 사례M4를 때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한국에 와서 일해 벌 수 있는 돈으로 생활비를 같이 부담하라고 함. 그리고 돈을 벌지 않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받아서 썼음. 잦은 부부싸움이 있었고 남편이 외국출장 가는 사이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사례M4가 살고 있는 집을 세놓는다며 다른 집에 이사 가라고 해서 친정 부모님과 다른 집을 구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음. 출장이 끝난 남편이 한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례M4를 찾아오지 않으며 술을 먹을 때만 전화해서 사례M4를 욕함. 사례M4가 남편한테 폭력을 많이 당했고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상담을 받고 이혼하기로 했음.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이 처음 계속 이혼을 원하지 않다고 하며 이혼해야 하면 자기가 지어진 빚과 시집에서 있는 빚을 나눠 갚으라고 함(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사례 2-2-가-4〉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가정폭력피해 입증의 어려움

사례M5는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청각장애가 있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함. 한국에 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음. 2012년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청각장애가 있음. 사례M5는 한국에 온 지 1달 후부터 남편은 생활에서 마음에 안 들면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사례M5를 때리면서 이혼하고 베트남에 가라고 수화로

했음. 그때마다 사례M5가 잘못이 없어도 무릎을 꿇고 잘 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음. 사례M5가 남편한테 많은 폭력을 당했고 시부모님한테서 구박을 많이 받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음. 뿐만 아니라 시집에서 생활하면서 식구들이 정신에 문제가 없는 사례M5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 약을 받아 먹였음. 2014년 말 남편이 아이를 빼앗긴 후 사례M5를 때리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안 나가면 죽인다고 했음.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사례M5가 혼자 나오게 되었음. 사례M5가 별거하면서 아이를 못 만났고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하기로 했음. 20015년 말 시작했는데 남편한테 폭력을 당한 증거가 없어서 폭력을 당한 만큼 위자료를 받지 못했음(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사례 2-2-가-5〉 시어머니와 남편의 신체적, 육체적 폭력행사

사례M14는 2012년 9월 결혼비자로 입국, 시부모, 남편, 아들(3세)과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일 일을 하고 있으나 용돈은 전혀 받지 못함. 남편은 지적장애자로 언어 소통능력이 떨어지나 성적욕구가 강함. 그러나 어머니와는 철저한 종속 관계로서 모든 가정사는 어머니가 주도하고 있음. 2013년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시어머니는 자신의 손자가 아니라며 아이를 거부하여 출산 10여일 만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전남이주여성인권쉼터에 연계 되었으며, 유전자 검사를 의뢰, 친자임이 확인되었음. 친자로 확인된 후 시어머니가 피해자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으나,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달라지지 않고 매일 늦게까지 식당일을 시키며, 아파도 병원에 보내주지 않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았음. 지적장애자인 남편은 무리하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며 거절할 시 무차별 구타가 이어졌고 시어머니는 이를 알면서도 방관함. 남편의 심한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시어머니는 “남편이 때렸다는 말을 하지말라”고 강요해 의사에게는 비밀로 하고 치료를 받음. 분노조절을 못하는 남편이 무섭고 두려우나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집을 나와 전남이주여성인권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음(해남·완도·진도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공).

나. 성폭력 피해 사례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기도 한다. 가정폭력 후 남편과의 별거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사례M7)도 있고, 성폭력 사건 이후 남편의 태도와 주변인들의 비난으로 2차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사례M8).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은 이주여성의 취약성으로 더욱 강해지는데, 사법기관의 이주여성에 대한 몰이해와 외국인 피해자 특성에 적합한 지원의 부족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성폭력 형사고소를 지속하기 보다는 고소를 중단하고 개인적인 합의로 사건을 종료하는 등 이주여성의 사법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2-2-나-1〉[47] 남편과 별거 중 집주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례M7은 평소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을 피해 집을 나와 살던 여성은 원룸을 얻어 이사를 하게 됨. 60대의 집주인 남성은 한국에 시집와 고생하며 산다며 좋은 말로 친한 척을 함. 그 호의를 무시할 수 없었던 여성은 집주인남성에게 고맙다는 인사 정도를 하며 지냄. 어느 날, 집주인(남성)이 수도세 등 돈을 받기 위해 방 안에 들어왔고 성폭력을 당함. 성폭력 피해 직후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가해자와 같은 차를 태우고(남성은 앞좌석, 여성은 뒷좌석) 이동했음. 조사과정에서도 가해자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음. 경찰의 태도에 심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 여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님을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음. 성폭력 사건은 본 상담소에서 피해자지원을 함(조사시 동석, 법률 진행 안내). 인권위에 진정이 들어간 후 경찰 내 감찰부서에서 나와 여성에게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음. 감찰 담당자들이 피해여성에게 사과함. 결과적으로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던 형사 2명은 감봉조치와 함께 다른 경찰서로 이동되는 등 조치가 취해짐. 그 후 경찰서 감찰부서에서 다시 여성에게 전화해 다시 사과함. 성폭력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검찰조사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0만원을 받고 합의함. 당시 가해자가 본인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서 담당검사가 100만원이라도 받고 합의를 하는게 그나마 낫다고 함. 여성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하며 검사의 말에 동의하고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함(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사례 2-2-나-2〉 성폭행 이후 남편 및 주변인들의 2차 가해

사례M8이 혼자 있을 때 동네 이웃남성이 집으로 몰래 들어와 여성을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름. 여성이 저항하자 가해자는 집 밖으로 도망침.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경찰에 성추행으로 고소함. 사건 후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지내면서 여성이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병원 입원과 자살기도 등 사안이 심각해지자 남편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함. 성추행 사건이 발생

47) 〈사례 2-2-나-1〉의 사례번호는 제2절 2. 나. 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한 후, 여성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도 받았음. 그러나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지내면서 사람들의 수군거림 등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살시도를 하게 됨. 이에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본 상담소를 통해 폭력피해이주여성쉼터에 자녀와 함께 입소를 의뢰하게 됨. 여성은 심신에 안정을 되찾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쉼터에서 지내기로 함. 상담소 법률지원을 통해 강제추행 건으로 고소를 했고, 합의금 1000만원을 받으면서 사건 종결. 그 후 여성은 쉼터에서 퇴소하고 집으로 귀가함.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남편이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함. 합의금으로 받은 1000만원은 남편이 관리했고 여성은 그 돈을 받지 못했음. 평소 가부장적으로 부인을 대하던 남편의 성격에 힘들었던 여성은 결국 남편과도 이혼을 함. 여성은 현재 자녀를 면접교섭하면서 지내고 있음. 여성이 고소와 조사과정에서 피해를 진술하면서 수치심을 많이 느껴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음. 가해자는 오히려 동네사람들에게 별 일 아니었다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님. 결국 피해자가 이사를 하게 됨. 남편은 상담과정에서 제3자들과 부인을 태도가 많이 달랐음. 부인에게는 매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우울감에 빠져있는 부인을 다그침. 사건이 종결되고 쉼터를 퇴소하면서도 강압적인 태도의 남편과 살기가 힘들다고 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됨(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강요 피해

이주여성의 주된 피해 유형 중 하나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로 인한 피해이다. 한국의 경우, 형법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와 관련된 규정이 도입되었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으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으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제도의 미비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몰이해로 인해 형사사법절차상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사례W4는 전형적인 태국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이다. 인신매매 브로커는 태국 인터넷 사이트에 한국에서 마사지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젊은 미혼 여성들을 모집하는데, 태국에서 3~5개월을 벌어야 가능한 돈을 1개월 동안 벌 수 있는 고수익 직업이기 때문에 많은 태국여성들이 한국행을 결정한다. 사례W4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모집공고를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으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브로커에게 빼앗긴 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성매매를 거부

하고 태국으로 돌아가길 요구하는 사례W4를 또 다른 업소로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성매매 강요 피해를 당하였다. 간신히 도움을 받아 탈출에 성공하여 경찰서로 오게 되었으나, 사례W4는 성매매 강요 등 강제적인 성적 피해로 발생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경찰의 피해자 조사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상당한 심리적 충격의 상태에 있는 사례W4에 대해 피해자 증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서 쉼터로 연계하여 일정기간 안정을 취한 뒤 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쉼터로 입소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여 상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사례W4는 성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며, 어떠한 수사협조도 거부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기만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사례W4가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제공).

현재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은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가해행위로 인정되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태국 대사관은 범죄피해자에게 귀국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 제공 등 귀국 지원비를 제공하는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 역시 피해를 초래한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입증해야 가능하다. 범죄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태국 대사관을 통해 귀국비용을 지원받더라도 본국에서 이를 상환해야만 한다. 사례W4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본인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해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입증이 실패하였는데, 이로 인해 사례W4는 태국 대사관의 귀국 지원이나 피해자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범죄피해자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성폭력 및 성매매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이 충격을 벗어나지 못해 조사과정을 못 견디는 경우가 많아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외국인 이주자로서 타국에서의 사건 조사 과정을 견디기에는 더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이 상담소 종사자들의 주된 의견이다.

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의 문제점

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결혼이주여성 사법접근권 제한과 침해

1)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는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이에 대해 사법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가정폭력 피해를 경찰에 호소하더라도 남편이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결혼이주여성의 가출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 가출로 의심하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된다(사례M10). 이러한 경찰의 대응을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들은 결국 형사사법절차로의 진입을 포기하게 된다.

〈사례 2-3-가-1)-1〉[48] 경찰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

사례M1은 대구 근교 지역의 면단위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으며 남편과 자녀들,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 남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셨고 주취폭력이 심했음. 자녀들 때문에 참고 살았으나 폭력은 계속되었고 오히려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함. 폭력 과정에서 목졸림 등 목숨에 위협을 느낀 여성은 동네 파출소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함. 경찰은 집으로 출동해 술에 취한 남편에게 경고를 하고 현장을 벗어남. 경찰, 시청, 동사무소에 이주민들이 가정폭력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모두 모른다고 함. 어떤 정보도 얻지 못했음. 어느 날, 남편의 주취폭력이 심해 경찰에 신고하고 차를 타고 파출소로 향하던 길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주취폭력에 대한 불만과 처벌을 요구함. (언성을 높여 불만투로) 그러자 경찰은 "아주머니 말하는 것 보니 남편이랑 많이 싸우겠네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화를 내지. 말을 그렇게 떽떽거리게 하니까.."라고 함. 그 뒤 사례M1은 동서의 도움으로 00상담소를 알게 되었고 가정폭력피해자로 쉼터입소, 법률지원을 받아 이혼소송을 했고 승소함. 남편은 이혼과정에서 이견없이 조정에 응했음. 현재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48) 〈사례 2-3-가-1)-1〉의 사례번호는 제2절 3. 가. 1)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사례 2-3-가-1)-2〉 경찰의 미흡한 사건처리로 인한 피해

사례M6은 결혼 생활동안 남편의 폭력이 심했음. 수차례 폭력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음. 그러다 2016년 겨울 목졸림 등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남편이 자는 틈을 이용해 새벽에 지구대에 가서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함. 그러나 경찰은 "현재 폭력 상황은 끝이 났지 않느냐, 원래 폭력이 행해지고 있을 때 신고하는 거다. 오늘은 그냥 집으로 가고, 내일 큰 경찰서(남부경찰서)에 가서 오늘 내용 신고하라."고 함.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여성을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었고 여성은 다음날 친구집에 간다고 하고 나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경찰서에 가서 어제 폭력상황에 대해 이야기함. 경찰에서는 쉼터에 연계를 해 주겠다고 했으나 여성은 집에서 계속 남편과 지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집에서 지냈음. 7개월 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며 여성이 00상담소를 찾았음. 상담 후, 상담소에서 경찰 기록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경찰서에 연락했으나 당시 여성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함. 왜 없냐고 상담원이 문의하자, 올해 1월에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었고,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함(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사례 2-3-가-1)-3〉 경찰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가정폭력 재발

사례M9는 거듭된 남편의 폭력이 있었지만 두 번 정도 경찰에 신고를 한 것 외에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았음. 출동한 경찰들은 남편을 지구대로 데려가서 조사한 적도 한 번도 없었으며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니 조용히 하라는 말만 하고 남편에게 와이프에게 잘해주라는 말만 하고는 돌아가버림. 이후 신고를 한 부인에게 더 화를 내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더 이상 신고를 하지 않게 됨. 또한 경찰을 통해서는 한 번도 쉼터라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여태껏 구타당하면서도 갈 곳이 없어서 폭력의 가정 안에서 있었다며 입소 후 울분을 토함(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사례 2-3-가-1)-4〉 피해여성의 쉼터 입소를 단순가출로 짐작 후 가출신고 해지 거부

사례M10은 가정폭력으로 쉼터 입소 후 시설 활동가와 동행하여 지구대에 가서 가출신고 해제를 하러감. *지구대에서는 “신고자가 해지해야만 한다”는 이유를 들며 이주여성을 단순 가출로 의심. 활동가가 항의하니 경찰서의 다른 부서로 전화해보고 나서 해지를 해줌. 가출해제를 아예 해주지 않는다는 지구대도 여러 곳 있어 그때마다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짐. 다행이 시설에 입소한 여성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의 경우 경찰의 단호한 거절로 가출신고 해지를 못

하다가 일반적인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음(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한국 내에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여성들은 가정폭력 신고 이후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이러한 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찰의 지원은 이주여성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사례 2-3-가-1)-5〉 경찰의 부실한 사후대처로 인한 불안감
가정폭력으로 지구대에 신고를 하니 경찰이 모텔로 긴급피난처라고 하면서 데리고 감. 데려다만 주고 식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틀 동안 아무도 안 오니까 불안해진 여성이 혼자서 모텔을 나와서 도움을 요청함(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제공).

2) 형사사법절차 통역 지원 미비 사례

상담소 및 쉼터 종사자들이 현재 이주여성의 범죄피해 지원에서 일차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형사사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된 통역의 확보 없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는 사법절차 중 사용되는 법률용어 등 전문 용어는 한국인들도 알아듣기 힘든데, 경찰이 피해자 조사 시 범죄피해자가 귀화하고 아이까지 있는 여성이라면 한국인처럼 한국어에 익숙하다고 전제하고 조사 및 증인진술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례 2-3-가-2)-1〉[49] 통역 미비로 비롯된 수사 종결
귀화한지 10년이 지난 사례W9는 성폭력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국적취득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통역없이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보니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도 없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초동수사를 받게 됨. 검찰조사에서 가해자가 혐의없음 판결이 내려지기 전 검사가 수사 중 합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결국 합의 후 종결함(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제공).

〈사례 2-3-가-2)-2〉 통역 미비로 비롯된 재판 연기
아내와 두 아이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한 필리핀 여성에게는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통역인이 있었음. 그러나 그 통역인은 한국인이면서 영어를

49) 〈사례 2-3-가-2)-1〉의 사례번호는 제2절 3. 가. 2)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잘하는 사람이어서 동행한 활동가가 듣기에는 **씨가 “아니요”라고 해야 하는 질문에 “예”로 대답하는 등 통역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여 증인진술 중 손을 들고 통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음. 경찰, 검찰조사 시에는 필리핀이면서 한국어도 잘하고 따갈로그어를 잘한 사람이 통역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니 판사는 필리핀 사람은 모두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음. 활동가는 필리핀에서 영어를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통역교체를 요구함. 가해자측 변호사는 계속 진행하기를 원했으나 판사가 재판날짜를 다시 잡아서 여성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말할 수 있었음(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제공).

〈사례 2-3-가-2)-3〉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없이 조사 진행

사례M13은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집으로 옮김. 이후 이혼을 위해 일주일 후 지구대에 경찰출동 확인서를 발부받으러 가니 시어머니가 사례M13을 현금 2300만원을 훔쳤다는 절도죄로 신고해 놓은 상태여서 경찰서로 옮겨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 이후 시설에서 이를 알게 되어 경찰서에 가니 일상적인 대화를 할 줄 알고 라오스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통역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어로 시어머니와 같이 조사를 받고 있었음. 이에 활동가가 항의를 하고 조사를 중지시킨 후 통역을 구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대구이주여성상담소 제공).

설혹 통역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통역인이 전문가가 아닌 그 지역에서 해당 언어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신의 출신국과 관련된 좁은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서 이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역인이 사적 관계에 따라 자의적인 통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통역인이 가정폭력에 관련된 사법절차에 대한 낮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인 피해자이 가정폭력 사건처리나 자신의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 통역만을 제공받아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경찰조사 단계의 통역은 그 지역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찰차원에서 통역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고는 파악되지 않으며, 그 해당 지역 집단 내에서 통역자가 나오므로 본인과 더 가까운 쪽이 더 유리하도록 통역하여 진술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한국이주여성

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

이러한 통역 지원의 문제는 비단 형사절차뿐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 관련된 가사소송절차 중에도 발생하는데, 특히 이혼소송 전 가사조정과정에서는 담당 가사조정관에 따라 통역자를 동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설혹 통역자의 동석을 가사조정관이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조정관 간에 오고가는 대화를 통역하는 통역자를 저지하는 사례도 보고된다(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 결혼이주여성의 특징에 대한 가사조정관의 이해 부족과 통역자에 대한 무시로 인해 가사조정관이 조정의 과정에서 통역자를 동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3)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적용의 미비

위에서 언급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피해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은 가정폭력사건의 처리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도의 존재와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사례M9의 경우, 수차례 남편의 신체적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통해 쉼터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정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적인 한계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결혼이주여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인 지원 이외에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경찰이 대부분 “쉼터로 가실래요?”라고 물었다고 하지만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여성에게 쉼터라고 하면 이해할 것이며, 그것도 남편이 옆에 있는데 묻는다면 어느 여성이 간다고 하겠습니까? 남편과 분리시킨 후 통역을 통해 쉼터로 갈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확실한 안내와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조치는 없어요. 하다못해 그 나라 언어로 된 책자라도 배치해둬야 하지 않나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공동대표)

> 특히 면단위 군단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광역시도 저희가 동반해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곳이 있습니까?"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정도로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전국이주여성쉼터연합회 고명숙 회장).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에게 지원되는 가정폭력 피해지원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도 보고된다. 대표적으로, 현재 가정폭력 피해지원제도상 폭력을 피해 거주를 이용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가족의 거주지 변동사항 열람에 대해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이 거주이동의 변동사항 열람을 제한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아닌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거소 변동 열람제한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

나. 취약한 체류지위와 여성폭력 피해의 중층결합

2014년 12월 30일 출입국관리법에는 결혼이민자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을 신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고, 체류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의2및제25조의3).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결혼이주여성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나 고소 등을 통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관련 가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의 특칙에 따라 체류연장을 받기가 어렵다. 게다가 또한 결혼이민자 특칙이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여부는 관할 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담소 종사자들은 그나마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출생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국 국적의 아이의 양육이나 면접교섭을 이유로 체류연장을 허가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체류연장을 허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한다. 설혹 한국 국적의 아이가 있더라도 아이 양육 내지 면접교섭권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나 판단기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책적 판단에 기대어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과거 가정폭력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집행했던 기간 동안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이유로 한국을 떠났던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한 채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된다. 또한 상담소 종사자들은 "체류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특칙규정은 규정으로만 존재할 뿐 현실적으로는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은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사례 2-3-나-1〉[50] 사전안내 미흡으로 인한 체류연장의 어려움

사례M12는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를 하다가 결국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고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고 한 달에 2번 면접교섭으로 아이들을 만나며 생활하고 있음. 그러나 남편은 여성에게 아이도 잘 안 보여 주고 피하기 일쑤인 상황임. 사례M12이 체류연장을 하러 출입국에 가니 아이들을 만나러간 증거를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라며(아이와 찍은 사진, 차표 등) 신청을 보류시킴. 미리 이러한 사실을 지난번 체류연장 때 공지를 했으면 준비를 했겠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와서야 알게 된 여성은 항의도 못해보고 돌아섬. 이후 활동가들이 동행하여 항의를 하였고, 출입국사무소에서는 3개월만 연장해주면서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함(전국이주여성쉼터연합회 제공).

출입국사무소에 연장하러 갔더니 아이를 만났다는 자료를 포토폴리오를 제출하라고. 하다못해 차표라도. 그러나 그 전에는 이 여성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을 대동해서 가서 다행이도 연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출입국의 체류연장이 지역마다 데스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

50) 〈사례 2-3-나-1〉의 사례번호는 제2절 3. 나. 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 이 모호합니다. 또한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 미리 공지가 되지 않고 체류 연장하러 가서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의하러 가면 출입국 사무소 측에서는 외국인이 잘 몰라서라고 하는데 한국인도 잘 안들어가는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가서 매번 확인합니까(전국이주여성쉼터연합회 고명숙 회장).

>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조건으로 한국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인데, 이 여성이 한국 남성과 재혼인데 이 여성에게 아이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그 아이를 입양해줬습니다. 이후 이혼을 하고 출입국에 체류연장을 하러 갔는데 아이가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류연장신청에 대해 거부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칙에 의해 성폭력 범죄행위가 외국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체류연장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 부부 간에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 부부 간의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칙의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외국인 여성들은 형사절차의 진행을 포기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담소 종사자들은 우선 외국인이 범죄행위로 벌금형 등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추방되는데 부인의 체류자격이 남편과 연동되어 있어 남편의 추방으로 여성들의 체류자격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체류연장을 신청하기가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 내지 고소로 인해 추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간 남편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 이러한 외국인 여성 피해자의 취약성은 남편의 추방 이후 여성과 아이들의 생계유지 어려움 등 경제적 취약성과 결합하여 외국인 여성이 폭력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게 만든다(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채희 센터장).

또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 특칙이 없기 때문에, 그 외의 범죄피해자의 체류 연장에 대해서는 행정상 어떠한 고려도 없어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이외에 범죄피해자나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기소 중지가 된 경우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형사절차가 종료되거나 피의자가 확인될 때까지 한국 체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반드시 체류가 필요한 범죄피

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일반에게 적용되는 재해 또는 사고로 거동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체류연장 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체류연장 허가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사례 2-3-나-3〉 체류가 반드시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체류연장 불허**
> 사례M11은 방문비자(C-3-9)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서류상 혼인신고 된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돌아갈 예정이었음. 협의이혼신고를 접수하고 공항으로 가던 중 의사소통 문제로 알게 된 중국동포 남성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고 숙소방값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손가락 일부를 절단당하는 상해(6주)를 입은 후 갈 곳이 없어서 쉼터에 입소하게 됨. 이혼신고여부와 범인이 잡힐 때까지 국내 체류가 필요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혼신고가 될 때까지는 체류를 연장해 주었으나 그 기간 때까지도 범인을 잡지 못하면 체류를 더 이상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고 범인이 잡혔다는 연락을 들으면 그때 다시 한국으로 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체류연장을 불허함(전국이주여성쉼터연합회 제공).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체류연장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때에 남편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거나 행정절차의 진행을 위해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출을 필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탈출한 결혼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폭력을 피해 긴급히 탈출한 여성들이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고명숙 회장). 현재 이러한 사례들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회수할 수 있는 강제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필수 요건으로 두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한 결혼이주여성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체류 연장시 남편의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으로부터 탈출한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

다. 외국인에 의해 발생한 폭력 피해 보호·지원 배제로 인한 피해의 가중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상 외국인의 경우 국가 간 상호보증주의에 입각하여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구조금을 제외한 다른 보호·지원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의 범죄 피해가 주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실태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외국인들을 방치하여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에 대한 사법기관의 미온적인 대응과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주여성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가해자의 국적을 이유로 국가가 보호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가 더욱 가중되어 피해자의 삶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사례W5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외국인(방글라데시)인 남편이 칼로 찔러 복부에 자상을 입고 5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사례W5의 체류 지위가 남편의 한국에서 이주노동지위에 기대어 있는 가족 비자(F-1)이기 때문에, 체류문제로 인해 고소를 포기하였다. 그로 인해 사례W5는 어떠한 범죄피해자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후 남편은 오히려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사례5와의 이혼을 주장하며 본인의 체류만 연장하고 아내와 아들의 체류기간 연장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사례W5가 방글라데시에서 부부가 반드시 법원에 함께 내방하여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성립된다는 방글라데시 법률사무소의 공증 받은 의견서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결혼 유지를 이유로 체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출입국사무소는 방글라데시의 이혼 관련법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으며 이혼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편의 협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제공).

사례W5의 경우 가해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흉기로 상해범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한 형사처벌을 포기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례W5는 신체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부터 배제됨으로써 범죄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어떠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 최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끼리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로 대체로 가해자

와 피해자 모두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범죄 피해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렵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 주로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합의금으로 이 부분을 만회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심각한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우 합의금만으로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합의금을 낼 수 없는 가해자는 처벌을 받든지 추방당하는 걸로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회복의 비용을 본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라.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 미비

현행법 하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유입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 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 ·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2)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18세 미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 · 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위의 사실을 알면서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할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4) 위에서 언급된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은닉하는 행위(성매매처벌법제2조제1항제3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3개월에서 2년의 범위에서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거나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률구조 및 수사·재판 출석 시 동행 서비스, 생계비 및 양육비 등의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제도 이외에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형사절차의 참여를 위한 지원 역시 중요한 지원의 대상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상 지원의 제도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서의 보호·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피해자 식별에 실패하여 피해자임에도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의 실패

상담소 종사자들은 앞서 살펴본 무비자로 입국한 태국 마사지사 사례들 대부분이 마사지사 모집으로 위장한 광고 사기로 한국으로 유입된 이후 성매매 강요 등을 경험한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많은 태국 여성들은 성매매 단속을 통해 경찰과 연결된 후에 성매매 사법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통역 등 피해자 진술을 조력할 수 있는 외국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 단계 초기에 인신매매 식별이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2) 귀국비용 지원 거부 사례

범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민간단체로서 공공기관의 지원범위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지원으로 피해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이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여부에 대해 확립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내국인의 지원 범위를 벗어난 외국인의 특성상 필요한 지원이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외에 인신매매 또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담소 종사자들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치료에 필요한 통역비등은 지원받은 경우가 있었으나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귀국비용이나 노동자 비자로 입국한 성폭력 피해여성의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난색을 표현하며 지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선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노동자 비자로 입국한 여성이 성폭력 피해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재판의 판결이 난후 판결문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등 한국에 계속 체류가 불가능하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한다.

> **〈사례 2-3-라-2)-1〉[51]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귀국비용 지원 거부**
> 사례W10은 일반 마사지 업소 취업인줄 알고 입국하였다가 성매매를 하는 업소임을 알고 대사관을 통해서 신고했고 한국경찰에 의해 구조되어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쉼터에 입소하게 되었음. 그러나 조사 후 귀국비용 지원이 문제됨.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만 연결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귀국비용을 지원해 본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함. 이런 경우 귀국비용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며 안 될 가능성이 높으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볼 예정이라는 답변만 들음(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제공).

3) 형사절차 참여 등을 위한 교통비 지원 거부 사례

사례W2와 사례W3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모집내용과 다르게 성매매를 강요받았으며, 브로커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사실상 감금상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되어 있었다. 성매매업소 단속을 통해 구출되었으며 서울에 위치한 이주여성쉼터로 입소하게 되는 등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관련 사건에 대해 보강조사가 필요하여 피해자 조사를 지방에 소재한 관할검찰청이 요청하였는데, 교통비 지원에서 외국인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아 사례W2와 사례W3은 교통비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교통비는 비자 등의 문제로 현재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검찰청에는 증인조사를 위한 교통비 지급 기준이 있으나, 이 때 교통비 지급을 위해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여권을 빼앗기고 사실상 감금상태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결국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이 없는 피해자들은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했다(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제공).

---

51) 〈사례 2-3-라-1〉의 사례번호는 제2절 3. 라. 의 첫 번째 사례를 의미함.

마.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 지원체계의 부재

사례W1은 강간미수치상으로 안면골 골절 등 심각한 신체 상해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가 구속되었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피의자가 피해보상을 해 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의 범죄피해자지원제도 연계로 입원비 및 수술비 등 병원비 지원을 받았으며, 일정부분의 생계비도 지원을 받았다(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제공).

그러나 문제는 심각한 신체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술한 이후 장기적인 피해회복의 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심각한 신체 상해에 대한 일차적인 치료비 등 병원비 지급은 현재 국내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나, 문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통원치료 및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가 쉽지 않다. 사례W1의 경우 통원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약값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지원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외국인인 사례W1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 체류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체류연장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는 전무하다. 게다가 이 기간 동안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렵기 때문에 간병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외국인인 사례W1에게 가능한 거주지 지원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나, 쉼터의 경우 한 명의 피해자에게 일상적 활동을 위한 간병을 제공할 유휴인력이 없으므로 실제 간병 등 돌봄을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쉼터의 경우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생활을 해야 하며 1인 1실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사례W1과 같이 중한 신체 피해로부터 회복을 해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사례W1은 지방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의탁하여 간병 등 사적인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KTX 비용 포함 교통비 등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관련 쉼터에서 계속 체류하게 되었다.

현재 간병비 지원은 외국인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국내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회복기간 동안 충분한 간병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52]

---

52) 최수형외(2014), 위의글, 제4장 참조.

또한 외국인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시신의 본국송환 내지 유족의 장례 초청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 침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가족의 입국이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담소 종사자들은 이러한 특수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 현재의 범죄피해자 지원체계에서는 포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민간의 기부금 모집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4. 소결: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의 한계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된 외국인인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등 여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지원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이주여성에 대한 사법접근권 및 지원제도 접근의 제한과 침해

사례 분석 결과 이주여성은 사법절차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차별과 배제로 인해 사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에 있어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사법절차에서의 통역과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주여성의 사법접근권 침해의 원인이 된다. 범죄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들은 주로 태국, 중국,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 현재 사법절차에서 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절차의 진행이나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범죄피해의 신고 직후 초기에 만나는 경찰이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식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상태가 지속되거나 가중된다.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내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법절차상 용어들을 이주여성이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통역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해도, 아시아 국가의 언어에 대한 통역 전문가가 아닌 해당 국가 출신의 지역 주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통역자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로 자의적인 통역이 제공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사법절차뿐 아니라 이혼 등 가사소송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적절한 통역의 미제공

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의 특성과 해당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경우에도 발생하는데, 단순 통역만 제공될 경우 결국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연계되지 못하기도 한다.

경찰 및 사법기관 종사관들의 여성폭력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와 성차별적인 인식이 문제가 된다. 특히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 이를 부부싸움으로 취급하는 경찰 및 사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이주여성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가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포기하게 된다. 그로 인해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한 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포기하고 참거나 이혼이나 가출 등의 회피의 방식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피해를 중단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현재 국내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성매매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주여성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이러한 보호·지원 체계와 연결되기가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통역의 미비뿐 아니라 이주여성의 취약성에 대한 배려 없이 한국인인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이주여성들이 이러한 지원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현행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피해자 조사 등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피해에 대해 사법적 대응을 하지 않거나 성폭력 및 성매매 강요 등 여성폭력 피해로 야기된 심리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피해자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형사절차 진행 중 2차 피해로 인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 취약한 체류 지위로 인한 피해의 가중과 지원의 한계

이주여성의 체류지위가 가해자인 남편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비록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결혼이민자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특칙을 마련하여 형사절차 및 권리구제절차의 진행 중 혹은 완료 후 체류연장에 대해 재량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접근권이 제한되고 있는 이주 여성들이 형사절차

나 권리구제절차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칙의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특칙상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체류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실제 외국인 부부 간 발생한 성폭력의 피해의 경우 가해자 남편의 추방으로 사건해결이 종료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아내와 아이의 체류지위의 문제와 경제적인 취약성, 본국으로 추방된 남편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 게다가 특칙의 적용이 행정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 시기별로 체류연장의 허가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실제 절차 종료 이후 체류연장 허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도 거의 없어 사실상 현행 법률의 입법 의도와 달리 피해자 체류지위의 취약성을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가정폭력의 피해에 대한 특칙 규정에 따라 체류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이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가정폭력 범죄를 피해 탈출한 여성들이 이러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남편 또는 결혼중개업자들에게 신분증의 회수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절차도 없어 피해자인 이주여성이 체류연장 허가신청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행정관청의 체류연장허가의 기준이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한국 국적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좁게 해석되고 있어서, 아이가 없는 경우나 한국인이 남편의 혈통은 아니나 남편이 입양한 피해자의 친자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범죄 피해와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 피해 이외의 다른 범죄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상의 어떠한 배려도 없어, 그 외의 범죄피해자는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에게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법기관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 신고로 인해 본인의 미등록 상태가 드러나 강제로 추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과정에서 피해자의 미등록 체류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공무원에게 부과되어 있는 통보의무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 역시 행정관청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고 면제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며 경찰 및 사법

기관 종사자들이 이러한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이해하고 있지 못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사례들이 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하더라도 추방의 두려움으로 구조 또는 구제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

다.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 배제의 문제

현재 범죄피해구조금제도를 제외한 기타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의 범죄행위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외국인 범죄피해가 외국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는 제도상의 기준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범죄피해가 방치되고 피해자의 삶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특히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의 피해와 취약한 체류지위, 외국인 피해자의 사법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들의 결합으로 인해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주여성 피해자들은 이제 외국인 가해자에 의한 폭력 피해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 제도로 인해 피해상황 중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라. 인신매매 및 성매매 강요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지원 미비

한국은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를 2015년 11월 25일 비준하고 2015년 12월 5일 발효하였다. 본 의정서를 비준하기 전 국내법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규정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한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나, 의정서의 발효 이후 형법상 인신매매죄(제289조)의 신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신매매의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처벌규정 도입 이외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지원 체계는

아직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19대 국회에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과 관련된 법안이 2개나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후,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어떠한 정부나 의회의 움직임도 없다. 그나마 성매매 목적으로 유입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성매매방지법법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초기 피해자 식별에 실패함으로 인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통해 성매매사범으로 출국 조치되고 있다.

또한 모든 인신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국비용이나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정부 지원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인신매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는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처벌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외국인으로서 취약성에 대해 고려 없이 내국인에 대한 지원을 기준으로 지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인신매매 피해자가 결국 지원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마. 외국인 특성을 고려한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의 불비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피해회복을 요하는 경우 적절한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국으로 송환되길 원하는 경우에 비행기 티켓값 등 상대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피해구제 및 사법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 등의 기타 비용이 발생하거나 외국인 피해자 사망이나 장해발생 시 시신 송환이나 유족 초청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피해자의 욕구에 적합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가 없고 내국인 피해자를 기준으로 보호 및 지원제도 및 절차가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범죄피해자와 가족은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5장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 다 혜

제5장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국제인권법 및 해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시사점

1.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원칙

가. 유엔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사법적 원칙의 관점은 198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범죄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 선언(the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53] 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선언은 범죄 및 인권 침해 피해자가 가지는 특별한 보호 욕구에 기초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상 대응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서 피해자의 권리장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국제적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권과 공정한 대우, 가해자 배상, 그리고 국가 보상 및 조력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권과 공정한 대우와 관련하여 국내법 절차를 정비할 회원국의 의무로서 형사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형사절차 참여, 법적 조력의 제공, 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조정과 같은 분쟁해결을 위한 비공식적 체계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제4조내지제6조), 가해자의 배상(restitution)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재산의 반환, 금전적 배상, 피해자화의 결과로 발생한 비용의 상환, 용역의 제공, 권리 회복을 포괄할 뿐 아니라 뿐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해

53) UNGA, Resolution 40/34: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 (1985) UN Doc A/RES/40/34.

환경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 환경이나 사회기반시설의 원상회복이나 이전 비용까지 포괄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및제10조), 이러한 배상을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재 이외에 양형요건으로 포괄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제11조). 국가 보상은 가해자나 그 이외의 자원을 통해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경제적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력범죄의 결과 신체적 손상 또는 심리적, 정신적 피해가 있는 피해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사망한 결과에 이르렀을 경우 유족에 대해 국가 기금을 확보하여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2조), 피해자의 국적국이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사례들을 포괄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피해자의 조력은 정부와 공동체를 통해 필요한 물질적, 의료적, 의료적, 사회적인 조력이 제공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이러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및제15조).

선언은 피해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내지 결과나 피해자의 국적, 체류지위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선언에서는 피해자를 국내법상 형사법 위반 작위 내지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가해자의 확인, 형사절차상 기소 내지 유죄판결 여부, 그리고 피해자 및 가해자와의 가족 관계 여부와 관계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조및제2조). 그리고 본 선언의 규정은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언어, 종교, 국적,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문화적 신념이나 관습, 재산, 출생 또는 가족 지위,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장애와 같은 구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제3조).

나. 유럽연합

유럽 내 국가들은 유럽의회 및 유럽 연합의 협약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외국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한 회원국의 국민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입은 범죄피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최근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된 사람들의 범죄피해에 대해 대응할 필요성이 공유되면서, 범

죄피해에 대한 보상, 보호 및 지원을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국적 등에 관계없이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피해에 대해 포섭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했다.

유럽연합 이전 유럽의회는 조약을 통해 유럽 내 폭력범죄 피해자 보상(compensation)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1983년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Compensation of Victims of Violent Crimes)[54]은 그 목적을 형평(equity)과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고의적인 폭력 범죄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다른 수단으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본 협약 제2조제2항에서는 보상은 가해자가 기소 또는 형사처벌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해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상 판단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보상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상의 범위는 임금의 손실 뿐 아니라 치료비, 장례비, 범죄피해로 인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비용을 포함한다(제4조). 본 협약은 범죄가 발생한 회원국이 자국민 뿐 아니라 유럽 의회 회원국 국적의 외국인 중 범죄 발생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해 피해자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2000년대에 들어와 유럽연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호 및 지원제도의 구축을 하게 된다. 우선, 유럽 이사회는 2001년 3월 15일 형사절차상 피해자 지위에 관한 결정(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55]을 하여 회원국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과 규칙을 마련하고 형사절차상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욕구를 고려한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체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했다. 여기에는 형사절차진행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법률 조력,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비용의 제공, 피해자 등 사생활에 대한 보호, 형사절차와 가해자 배상의 경합, 형사절차상 조정의 도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럽 연합 내 외국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54) Council of Europ Protal Treaty Office, Treaty No.116, Strasbourg, 24/11/1983,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rms/0900001680079751 참조.

55) 2001/220/JHA: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01.082.01.0001.01.ENG&toc=OJ:L:2001:082:TOC 참조.

경우, 회원국들은 범죄가 발생한 국가 내에서 외국인인 피해자가 직면할 수 있는 거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피해자 진술과 영상 및 전화 진술 등의 절차를 정비하고, 해외에 거주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제11조).

그러나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회원국이 아닌 외국인의 범죄피해가 늘어나면서, 2011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는 회원국 국민들에 한정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된 사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했다.[56] 본 지침은 성적 착취, 성학대, 강간, 노예상태, 장기매매 등과 관련하여 인신매매된 사람의 취약성으로 인한 형사절차상 2차 피해의 발생과 트라우마 등 심리적 피해에 주목하여 형사절차상 특별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고려한 특정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신매매된 자의 범죄 가담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뿐만 아니라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해 조력과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제공이 수사, 기소 및 재판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협조를 전제로 조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제1항및제3항). 이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지원, 상담, 통역과 번역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의료적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적절하고 안전한 거주지 지원과 물질적 조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제5항). 회원국이 아닌 피해자에게는 국제인권법상 보장되는 난민 등 국적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위 보장과 권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임신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의 심각한 결과 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제11조제6항및제7항). 또한 수사와 형사절차에서의 법률적 조력에 법적 대리인의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절차에서 증인으로 협력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반복 조사나 가해자와의 대면 조사,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 등 형사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하도록

56)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101:0001:0011:EN:PDF 참조.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보다 특별한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내지제16조). 또한 본 지침은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고의 폭력범죄 피해자 보상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지원제도의 기준을 마련한 2011년 인신매매 피해자 지침을 바탕으로 2012년 10월 25일 유럽연합은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피해자의 보상, 보호와 지원 기준을 개정하게 된다. 2012년 10월 25일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는 2001년 결정을 대체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지원, 보호에 관한 최소 기준의 구축을 위한 지침[57]을 결의했다. 본 지침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인종, 피부색, 민족 내지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소수민족 성원, 재산, 출생, 장애, 연령, 성별, 성별 표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체류 지위, 건강 등에 기반한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모든 보호 및 지원제도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통합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충분한 사법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국 내 범죄피해자의 체류 지위나 국적, 시민권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ara.9,10).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는 (1) 정보 및 지원과 관련된 권리로서, 이해하고 이해받을 권리, 관할 당국과의 최초 접촉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고소인의 권리, 형사사건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통역과 번역의 권리, 피해자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2) 형사절차의 참여와 관련된 권리로서, 피해자 의견이 청취될 권리, 불기소결정사유를 제공받을 권리, 회복적 사법 서비스의 진행시 안전에 대한 권리, 법력 조력에 대한 권리, 형사절차 참여 비용을 제공받을 권리, 피해품 환부의 권리, 형사절차 중 가해자 배상 결정을 받을 권리, 다른 회원국에서의 피해자 거주에

57)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1/220/JHA,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2L0029#ntr4-L_2012315EN.01005701-E0004 참조.

관한 권리, (3)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로서, 보호권,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할 권리, 수사과정에서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의 권리, 피해자와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이다.

2. 해외 주요 국가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가.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로 범죄피해자 보상제도를 시행한 나라로, 1963년 범죄피해자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63)을 제정하고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범죄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58]

현재 뉴질랜드 범죄피해보상제도는 2001년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 2001)[59]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법은 뉴질랜드 영토 내에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침해에 대해 최초 사고 보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선과 사회 계약을 강화시키고[60] 신청인의 건강, 자립, 참여를 회복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제3조). 이 법은 범죄피해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이나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 적용되며, 다만 의료과실 일부나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는 포괄하지 않는다(제25조). 범죄피해보상이 사고보상체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의 형태가 고의든 과실이든 불문한다. 또한 본 법에서는 재활, 치료, 사회적 복귀를 포괄한 범죄피해의 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고 발생 첫주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소득의 손실에 대한 주단위 보상금, 영구적 장애에 대한 총 보상금, 장례비, 생존자 지원금 배우자나 파트너, 자녀, 기타 부양자 등에 대한 보상금, 아동 돌봄

58) Law Commission(2008), Compensation Crime Victims, Issue Paper 11(October 2008), Wellington, New Zealand, 2-4쪽.

59) Public Act 2001 No 49, http://www.legislation.govt.nz/act/public/2001/0049/latest/DLM99494.html. 본 법의 정식 부제는 침해(Injury) 예방, 재활 및 보상으로 2001년 침해 예방, 재활 및 보상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60) 뉴질랜드는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 및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사회계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로 보며, 범죄피해나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공동체 인식에 대해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Law Commission(2008), Ibid, 6-8쪽 참조.

비용 등이 보상의 범위에 해당된다(제69조제1항).

본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은 뉴질랜드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ordinarily resident)와 그 가족 또는 부양자여야 하는데, 영구적인 거주지가 뉴질랜드이며,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민법상의 거주비자(residence class)를 받은 자, 또는 위와 같은 사람들의 배우자나 가족들 중 6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제17조).[61] 뉴질랜드 거주비자는 이주, 노동, 유학의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영구 거주 비자와 구분된다. 그러므로 뉴질랜드에서 보상의 범위는 뉴질랜드 국적의 시민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를 포괄한다.

피해 보상이 뉴질랜드의 국가연금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법무부) 지원은 2002년 피해자권리법(Victims' Rights Act 2002)에 따라 별도의 정보 기금 체계 하에서 이루어진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는 유족들을 위한 상담비(6회기), 유족들에 대한 재량적 긴급 생계지원금, 중범죄 피해자를 위한 교통, 돌봄, 숙박 비용, 범죄피해자 긴급 지원금, 형사절차 조력을 위한 교통 및 숙박비 지원 등이 있다.[62] 여기에는 범죄피해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인 Victim Support에 대한 기금 지원이 포함된다.[63] 피해자권리법에 근거한 피해자 지원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률조력과 관련하여서는 뉴질랜드의 법률구조기금에 의한 변호사 선임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의 시민이거나 영주권 등 시민권 자격을 요하지 않으며 오직 경제적 취약성이 지원 요건이다.[64] 미등록 상태의 외국인인 경우에도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괴롭힘, 착취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뉴질랜드의 노동법 하에서 이민국과 노동검사관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고 형사절차에 협조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5] 특히 이주 사기 등

61) 김현철(2015), 위의글, 59-60쪽.
62) Law Commission(2008), Ibid, 19쪽.
63) 원혜욱 외(2015),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외국의 법과 제도, 법무부 인권구조과, 미간행, 177쪽.
64) 노정연, "[해외견학·연수기] 뉴질랜드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돌아보고", 법률신문(2013.2.28.),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2831.
65) New Zealand Immigration, How an employer may be exploiting employees,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는 경찰이 인신매매 피해자임을 확인하면 2001년 피해자권리법에 따른 2015년 피해자 규정(Victims Code)에서 제공되는 범죄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66]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 중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기만을 원하는 경우 노동부와 외교부가 이들의 송환을 위해 인도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욕구에 따라 경찰이 피해사실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질적인 기간 동안 체류를 보장한다.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피해자에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부는 장기간 이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 피해자의 욕구에 따라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67]

나. 영국

영국은 뉴질랜드에 이어 1964년 범죄피해에 대한 보상제도(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를 확립하였으며, 1970년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확립한 최초의 나라이다.[68] 현재 영국은 1995년 범죄피해보상법(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ct 1995)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하에서 2012년 범죄피해자보상계획(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2012)을 수립하였다. 2015년 현재 폭력범죄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피해자로부터 연간 4~6만여 건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하여 약 2~4억 파운드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공적 손해전보제도의 활발한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69] 1995년 이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관습법상의 손해

---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policy-and-law/integrity-of-the-immigration-system/migrant-exploitation(검색일: 2017.11.26.).

66) New Zealand Immigration, Help for 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policy-and-law/integrity-of-the-immigration-system/people-trafficking/help-for-victims-of-people-trafficking(검색일: 2017.11.26.).

67) New Zealand Department of Labour(2009), PLAN OF ACTION TO PREVENT PEOPLE TRAFFICKING, https://www.immigration.govt.nz/documents/about-us/plan-of-action-to-prevent-people-trafficking.pdf

68) 원혜욱 외(2015), 위의글, 100쪽.

69) 황태정(2015), 영국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법제도적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272쪽.

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자력이 없는 범죄자를 대신하여 정부가 은혜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그 손해의 정도와 과실의 정도 등에 대한 엄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범죄피해자보상법 마련 이후 이러한 형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실제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상해의 정도를 등급화하고 그 등급에 따라 보상급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심사 및 지급의 신속화를 꾀한 결과 보상제도의 활성화가 가능했다고 평가된다.[70]

영국의 범죄피해보상은 영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에게 이루어지며, 보상급 지급 대상은 1) 영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2) 범죄행위 발생시점에 영국 시민권자 내지 시민권자의 근친이거나,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 국민의 가족인 이유로 영국에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1983년 폭력범죄 피해자보상 유럽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영국국민의 구성원 내지 동거하는 근친인 경우이다.[71]

영국은 2012년 범죄피해보상계획상의 보상대상의 범위를 관계 당국에 의해 잠정적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자 또는 1971년 이민법상 이주규정에 따른 망명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72] 이에 따라 망명신청 2년 이내 영국 영역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침해를 경험하여 노무에 종사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자로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고 형사절차에 협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의료비용이나 돌봄비용 등 역시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증거와 피해 및 치료와 관련된 상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주규정에 따른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73]

---

70) 원혜욱 외(2015), 위의글, 83쪽.
71) 앞의글, 94쪽; 황태정(2015), 위의글, 276-7쪽.
72)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 2012, para. 13.
73)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2014),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2014.9.8.), UK government.

다. 독일

독일은 1976년 5월 11일 제정되고 1985년 1월 7일 반포된 폭력범죄피해자의 배상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이하 피해자보상법)[74]에 근거를 두고 범죄피해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법에 의한 피해자 보상의 목적은 피해자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 피부양자들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연방사회보장법에 의해 주정부 및 사회보장 관련 기관에 의해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75] 본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은 독일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고의에 의한 신체적 불법행위로 인한 신체적 범죄피해로서 정신적 피해는 제외되며,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보상이 제공되기 때문에 제한된 금액을 받게 된다.[76]

법률제정 당시에는 독일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일시민권자 및 상호보증이 되는 외국인만이 대상이었으나, 2009년 6월 25일 개정으로 독일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77] 피해자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 독일인과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는 유럽공동체의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 상호보증이 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이다(제1조제4항).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도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6개월 미만 단기 거주 제외)한 자 중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독일에 거주한 외국인은 독일인과 동일한 혜택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소득과는 무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동조제5항). 또한 6개월 이상 독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독일인 또는 동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외국인과 3촌 이내의 친족 관계가 있거나 동조 제8항의 범죄피해자의 가족 내지 부양자 등 유족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983년 폭력범죄 피해자 보상에 관한 유럽 협약에 가입된 회원국의 국민인 경우에

---

74) Opferentschädigungsgesetz(피해자보상법) vom 11. Mai 1976, BGBl. I, S. 1181,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oeg/englisch_oeg.html.
75) 김현철(2015), 위의글, 94-95쪽.
76) 원혜욱 외(2015), 위의글, 195쪽.
77) 앞의글.

소득과 무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동조제6항).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이 추방되었거나 체류자격의 만료로 출국하였거나 출국 후 6개월 이내 재입국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년도까지 독일에서 지속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고 3개월 기초 연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7조).

피해자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치료비뿐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의료품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여기에는 피해에 의한 수입의 손실에 대해 이전 수입 및 재산에 상응하는 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 및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이 지급되며, 이러한 연금의 종류에는 기초연금, 유족연금, 아동연금, 조정연금이 포함된다. 보상금은 요건이 충족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78]

라. 일본

일본은 2000년 제정된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2004년 제정된 「범죄피해자 등 기본법」과 1988년 제정되고 2008년 전면 개정된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현행 피해자보상제도는 2014년 개정된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범죄피해보상에 되는 피해는 일본의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일본선박, 일본 항공기 내에서 이루어진 고의에 의하여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에 의한 피해로, 여기에는 긴급피난, 심신상실,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서 형법상 불가벌이 되는 행위는 포함되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는 배제된다(제2조). 이 때 범죄피해급부금의 지급대상은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며, 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일본 국적을 가진 자와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제3조).[79] 이에 따라 일본은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이더라도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범죄피해급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 사망시 유족이 일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도 지급받

78) 앞의글, 197쪽.
79) 원혜욱 외(2015), 위의글, 35-81쪽 참조.

을 수 있다.[80]

3. 헌법상 피해자 보상 명시한 국가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 여부

가. 스위스

스위스 연방헌법은 제124조에서 “형사피해자 구조”라는 표제 하에 “연방과 주는 형사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으로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구조를 받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권리와 관련하여, 스위스는 1991년 10월 4일 제정된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연방법률(Bundesgesetz über die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이하 피해자구조법)을 통해 법률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구조법은 2007년 3월 23일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7년 현재 2007년 개정법률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구조법에서는 구조의 내용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조력, 상담소를 통한 장기간 조력, 제3자의 장기간 조력에 대한 비용의 지원, 보상, 법적 비용의 면제 등으로 규정한다(제2조). 구조대상인 피해자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에 의해 신체적, 성적, 정신적 완결성을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기타 유사한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족)을 포괄한다(제1조제1항및제2항). 이 때 피해자의 구조청구권은 가해자가 수사되었는지 여부, 가해자가 행위에 책임(schuldhaft)이 있는지 여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제1조제3항). 본 법에서는 급부의 지급 범위에 대해 스위스에서 적정한 의료적, 정신의학적, 사회적, 물질적, 그리고 사법적 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제1항). 본 법에 따른 보상은 상해 및 사망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루어지며, 범죄피해로 인해 노동력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 내지 자녀 돌봄에 대한 추가적인 손실 역시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제19조).

본 법에 따른 구조의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스위스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주소지와 국적과 무관하게

80) 이건호(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0쪽.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구조는 스위스 내에 주소지를 가진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81] 또한 외국에 주소지를 가진 사람이 스위스에서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스위스에서 제공될 수 있는 지원 이외에 추가로 주소지에서의 치료 비용에 대한 비용지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14조제1항).

스위스의 경우 헌법상 피해자 보상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 영역 내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스위스 내 주소를 가진 외국인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에 주소지를 가진 경우에도 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해 법률상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상 피해자 보상 규정이 우리의 경우와 같이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형사피해자 보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스위스가 헌법상 명문화된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시민권자에 한정하지 않는 것은 천부적이며 포괄적인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헌법을 해석하는 태도에 근거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피해자구조법에서 피해자 개념을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완전성을 침해당한 모든 사람(제1조제1항)"으로 광의로 규정하고, 구조의 대상인 피해를 초래한 범죄행위가 범죄자의 책임있는 행위로 인한 것인지 또는 범죄자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동조제3항) 피해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원과 구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스위스는 피해자구조법에 따른 지원체계로서 연방의 기금 지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1개 이상의 자문센터(상담소)를 설치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법적 지원을 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82] 이러한 지원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비, 변호사선임비 및 소송비용과 같은 추가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83]

---

81) Bundesamt für Justiz, Broschüre "Opferhilfe nach einer Straftat in der Schweiz" Informationen für Opfer und ihre Angehörigen(2015.1.), p. 3.
82) 장병일, 성홍새(2007),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23쪽.
83) 위의책, 24쪽.

나. 멕시코

현행 멕시코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권리를 대해 명문화하고 있다. 제20조에서는 형사재판절차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C항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률 상담을 받을 권리, 헌법상 보장된 권리 및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재판에 개입하고 법률에 따른 법적 수단을 활용할 권리, 범죄가 발생한 때로부터 긴급한 의료적·심리적 조력을 받을 권리, 보상(reparation)을 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상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멕시코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피해자의 보상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때에 검찰은 피해자 배상(redress)을 요청해야 하며, 피해자 본인이 요청할 수 있다. 판사는 유죄 사건에서 배상하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없다. 배상 판결에 관한 신속한 절차는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멕시코 헌법은 검찰에게 피해자 조력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실행해야 할 의무와 피해자 및 증인, 기타 관련 당사자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관련 사건, 인신매매 사건, 약취·유인 사건, 조직범죄 사건에서 판사에게 피해자 신원 및 기타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 시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피해자 보호 의무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판사에게는 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소추의 유예나 부족한 실행, 포기 등과 같은 검찰의 수사 소홀에 대해서나 배상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 절차의 연장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자국 내 약물 관련 인신매매 조직과 조직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7만 건 이상 살인사건과 2만7천 건 이상의 실종사건으로 인한 광범위한 범죄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5월 연방법인 범죄피해자일반법(The General Law of Victim, *Ley General de Víctimas*)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인권 침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마약 전쟁(the drug war)뿐만 아니라 조직범죄로 발생한 살인 또는 실종 사건의 범죄피해자 국가등록제도(the National Registry of Victims, *Registro*)를 운영하고, 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연방차원의 피해자지원 행정위원회(Executive Commission for Victims' Care, *Comisión Ejecutiva de Atención a Víctimas*, 이하 CEAV) 등 집행기구를 마련하고, 주 및 기초 단위의 지방정부가 정신적·물질적

침해에 대해 보상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국가 체계를 정비하였다.[84] 또한 범죄피해자 일반법에서는 피해자를 본 법 하에서 특정한 권리를 가진 법적 주체로 규정하고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가까운(close)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간접 피해자도 피해자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피해자보상금 지급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기금(special fund, *Fondo*)을 마련하였다.[85] 범죄피해자일반법은 범죄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로부터 출발하여, 형사법 위반뿐 아니라 헌법 및 국제조약상 인권에 영향을 주는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포섭한다(제6조). 또한 피해의 내용에는 범죄 또는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내지 감정적 침해·손상 내지 일반적으로 법적 자산 내지 권리의 위태 또는 손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며, 간접 피해자의 범위에는 피해자를 조력하거나 범죄 내지 침해행위를 예방 내지 중단시키고자 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자화까지 포함된다.[86]

멕시코에서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일반법 제16조및제17조에서 "외국인 피해자와 재외 국민 피해자에 대한 주의, 조력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신의 본국 송환 조치 등이 포함된다.[87] 이렇게 외국인 및 재외 국민 피해자까지 멕시코 국내법상 지원대상으로 포섭하는 근거는 본 법에서 인정하는 피해자 지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법기구(예를 들어,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and Court와 the Human Rights Committee 등)의 결정에 의한 것까지 포괄하며 이러한 국제사법기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 CEAV가 자동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도록 체계화하였기 때문이다. CEAV는 이러한 체계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 모델(Comprehensive Model of Support for Victims', *Modelo Integral de Atención a Víctimas*)의 구축을 통해 마련하였다.[88]

---

84) Nicolás Rodríguez Serna and Jean-François Durieux(2015), The displaced as victims of organised crime: Mexico and Colombia compared, in D.J. Cantor and N. Rodríguez Serna (eds.), *The New Refugees: Crime and Displacement in Latin America*,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p. 112.

85) Lauren Villagran(2013), *The Victims' Movement in Mexico*, Working Paper Series on Civic Engagement and Public Security in Mexico(2013.8.), Mexico Institute, pp. 15-16.

86) Nicolás Rodríguez Serna and Jean-François Durieux(2015), *Ibid*, pp. 114-115.

87) *Ibid*, p. 122.

88) *Ibid*, pp. 121-123.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국제법 및 해외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와 보호지원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법상 인권에 기초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원칙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보호, 지원이 형사사법절차의 진행 내지 결과나 피해자의 국적, 체류지위 등에 관계없이 국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피해에 대응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공동체 내 회원국들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유럽협약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과 지원의 기준을 확대해왔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이나 영국의 범죄피해자보상제도 확대에 영향을 준 계기는 유럽사법재판소(EuGH)의 Cowan사건 결정이었다. 영국 국민인 William Cowan은 프랑스 여행 도중 역사 출구에서 강도를 만나 상해를 당하여 프랑스 법원에 범죄피해자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영국과 상호주의 협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이유로 유럽공동체협약 제7조의 차별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은 공동체법을 근거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범죄피해자보상에 있어서 자국국민들에 비하여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차별금지조항의 적용을 인정하였다.[89] 이 결정 이후 프랑스는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그 범죄행위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고, 또 피해자의 국적이 유럽연합국의 하나이거나 범죄행위 또는 보상청구권 주장 당시 유효한 체류허가를 가지고 프랑스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는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다.[90] 영국이나 독일 역시 보상금액에 차등을 주긴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영국, 독일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이나 스위스의 경우 체류자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89) 방승주(201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 유럽헌법연구 제19호, 176-181쪽.
90) 김현철(2015), 위의글, 105쪽.

자국 내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해 국적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체류자격의 요건을 두고 있는 국가들 역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불법체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적법한 장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에 대해 괴롭힘, 사기, 착취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부와 인민국의 협력을 통해 이들의 범죄피해에 대해 지원하고 형사절차가 진행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 외국인 이주자의 체류 자격이 적법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셋째, 우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피해자 보상을 명문화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와 멕시코로, 모두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또는 보호·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국적이나 주소지 여부가 피해자 구조 여부와 관련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외국인이라도 피해자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및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법률상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는 피해자 지위의 인정을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에 따른 국제사법기구의 결정까지 포괄함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국내법상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현재 한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의 실태와 이에 대한 보상, 보호 및 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개선방안의 방향으로 앞선 절에서 살펴본 국제인권법과 해외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보호 및 지원의 정책적 방향과 주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1. 국제인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 권리의 실현을 위한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 지원의 사법적 원칙의 근거와 방향은 동등과 공정의 기본적인 인권으로부터 도출한 범죄피해자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에서부터 출발한다. 범죄행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범죄피해자의 공정한 사법접근권 및 대우를 받을 권리와 피해회복 및 원상회복을 위해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권리, 그리고 국가에게 보상받을 권리에 근거하여, 국제인권법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크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가해자 배상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형사사법절차와 민사적 배상의 절차적 결합, 가해자 배상을 통해 충분히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가에 의한 경제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재원과 지원체계의 마련으로 나누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로부터 도출한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이라는 방향은 나라별로 권리보장의 범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헌법상 피해자의 권리 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공통된다.

국제인권법상 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 대한 기본적 원칙은 국가가 형사절차의 진행이나 피해자의 국적, 체류지위와 관계없이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피해에 대응할 것에 대해 천명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공정한 대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연령, 언어, 종교, 국적,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문화적 신념이나 관습, 재산, 출생 또는 가족 지위, 민족 또는 사회적 출신, 장애와 같은 개인의 속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상 기본원칙은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범죄피해구조청구권에 근거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 헌법상 범죄피해구조청구권의 본질에 대해서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와 사회국가 이념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의 차원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이 주된 학설의 입장이며, 헌법재판소의 견해 역시 일치한다.[91] 또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해서 헌법재판

91) 헌법재판소 1989.4.17.선고 88헌마3 결정, 헌법재판소 2011.12.29.선고 2009헌마 354결정 참조.

소는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외국인을 기본권의 주체로 보고 있다.[92] 그러므로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권리에서 도출된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권리에 따라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제인권법상 기본원칙에 맞추어 현재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에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 국내 주소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가해자의 배상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한 사망, 장해,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상호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호보증의 기준은 과거 상호보증주의를 채택했던 독일의 기준에 따라 해외 국가와의 상호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사실상의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93] 구체적인 판단은 법무부가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금이 범죄피해자의 어려움을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그의 재활과 또한 유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제한은 한국에서 심각한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94] 국가보상의 의미와 범죄피해자 등의 사회보상에 관련된 국제기준에 다르더라도 상호보증원칙에 따라 외국인 보호를 제한하는 것은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따라 해당국가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 상호주의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국제법규에 반할 뿐 아니라 무국적자나 난민의 경우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95] 과거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 보상했던 독일 역시 법개

92) 헌법재판소 2007. 8. 30.선고 2004헌마670 결정 참조.
93) 김광석(2001), 사회보상의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국가유공자보상, 접종피해보상, 의사상자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0권제1호, 186쪽.
94) 방승주(2015), 위의글, 158-159쪽.
95) 김광석(2001), 위의글, 187쪽.

정을 통해 상호주의원칙을 폐기하였다.

현재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일본, 멕시코, 스위스 등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두고 있다. 나라별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와 체류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자보상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는 스위스나 통합적인 보상체계가 아닌 국가보상을 범죄피해자 급부금 지급으로 한정하고 기타 경제적 지원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우리와 같은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보상금 지급 대상을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중대한 범죄피해에 대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이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범죄로 인한 사망 등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제기되어 왔고,[96] 2009년 국민권익위위원회에서도 국민 배우자인 외국인이 범죄피해를 입을 경우 범죄피해자구조급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인 2년 이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적법하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바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보호지원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계에서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9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구조대상피해자의 범위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

96) 동아일보, "[2010그 사건 그 후]〈5〉베트남 새댁, 정신병력 남편에 피살", 2010.12.15., http://news.donga.com/Series/70030000000674/3/70030000000674/20101215/33291319/1#csidx66d0e72646f60389b6e1cc9068a27b7; 연합뉴스, "토막살인 피해자 유족,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못 받아", 2014.12.16.,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4/12/16/0811010000AKR20141216179900061.HTML; 노컷뉴스, "같은 외국인인데, 범인에겐 변호사, 피해자는 무지원", 2010.8.6., www.nocutnews.co.kr/741904 참조.

97) 방승주(2015), 위의글; 오경식 외(2011), 중장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법무부, 76쪽; 김현철(2015), 위의글; 김혜정, 강승기(201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남법학 제38권, 9-10쪽 등 참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일본, 스위스와 같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그러나 법률상 범죄피해구조금의 성질상 국내에 주소지를 가진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체류지위 및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의 확대

우리의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국가보상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고 범죄피해자구조금과 그 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사법접근권 실현을 위한 보호 및 지원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법률상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구조금과 달리 피해회복 및 사법접근권 실현을 위한 보호·지원제도의 경우에는 대검찰청 예규(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를 통해 경제적 지원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은 외국인"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지침의 규정을 수정하여,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평등원칙에 기초하여 체류지위나 가해자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이 취약한 체류 지위로 인해 범죄피해에 사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제도상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과 범죄피해자 권리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한 지원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에 의해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로 한정한 대검찰청 예규와 법무부의 피해회복지원(간병비 등 지원) 관련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상태의 범죄피해자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 없이 센터별로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제인권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법기본원칙에 따라 체류지위와 관계없이 정당한 피해자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검찰청 예규 및 법무부 피해회복 지원 가이드라인에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범죄피해자 중 한국인에 의한 범죄피해를 경험한 경우로 외국인 지원

을 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체류지위나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의 내용과 피해자의 욕구에 기초하여 피해회복 및 사법접근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국인인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사법접근권 강화 방안의 마련

가. 통역 및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앞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사법절차와 진행과정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절차의 진행에서 통역 및 번역의 제한과 미비가 일차적인 장애임이 확인되었다.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법절차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권 및 지원체계 접근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럽연합은 지침으로 통역과 번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범죄피해자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고, 뉴질랜드, 영국 등은 다양한 언어로 범죄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사절차와 지원체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행 한국의 형사절차에서도 외국인 피고인을 위한 통역 등의 제공에 대해 내규를 마련하여 통역 등의 조력을 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접근하는 외국인에 대해 통역 서비스에 대한 지원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 출신의 이주민인 경우 전문적인 통역인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국가 출신의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중립성과 전문성에 큰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법절차를 활용하는 범죄피해자에게는 해당 사건의 특성과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의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이해될 수 있는 언어를 통해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문성 없이 단순통역만이 제공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해서는 가치중립과 공신력이 보장된 통역인에 의한 통역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역자에 대한 범죄행위별 특성과 관련 법률상 보호 및 지원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피해자 통역 및 번역 지원제도의 마련을 위해 현재 통역시스템을 갖춘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나.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의 체류지위에 대한 보장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류지위 보장은 국민 배우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사법적 구조 또는 구제철자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기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의무에 대한 면책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상의 조치는 체류지위의 하자로 인해 범죄피해에 대한 호소나 대응이 제한되지 않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류연장 허가나 공무원 통보의무 면책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성폭력과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결혼이민자에만 한정하여 체류연장을 허용함으로써 그 외의 범죄피해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뉴질랜드는 인신매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범죄 및 인권침해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불법체류 상태에 있더라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절차의 진행에 협조하는 경우에 절차 진행 중 뉴질랜드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6개월 또는 1년의 체류기간을 보장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

모든 범죄피해에 대해 형사절차 및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인 합법적 체류지위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범죄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체류가 필요한 경우 절차의 완료 이후에도 체류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류연장의 허가를 행정관청의 재량사항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에 따라 일정한 체류기간과 요건을 명시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체류연장을 당연 허가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외국인에 대한 사법 초기 단계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고지 및 안내 강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인의 범죄피

해자 지원제도로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경찰은 범죄 발생 이후 최초로 만나게 되는 사법기관으로, 사법절차로의 접근 초기 단계에서 경찰에 의해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제도의 내용이 제대로 고지·안내된다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경찰에 의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고지·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이 이해가능한 언어로 번역·통역되어 안내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외국인인 범죄피해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의 고지·안내가 이해가능한 언어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내의 내용에는 체류지위 및 거주의 문제 등 외국인 특성과 관련된 내용 및 이주민 상담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소개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3. 국제인권법상 보장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의 마련

한국은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2015년 11월 25일 비준하고 2015년 12월 5일 발효하였다. 본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그 밖의 형태의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악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령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제3조제가호)", 이는 성매매,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강제고용, 노예제도 등과 같은 관행, 예속, 또는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와 내심에 부하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역 또는 국경을 넘어 사람을 이동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는 인신매매 행위가 있는 경우 인신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인신매매에 해당한다(제3조제나호및제다호). 본 의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범죄가 초국가적이며 조직범죄가 관여된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의정서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는

피해자 사생활 및 신원의 보호, 피해자 신변의 보호, 국내법 및 행정체계의 정보제공 및 피해자의 견해와 의견을 들을 의무,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회복을 위한 적절한 주거지 제공 및 이해될 수 있는 언어의 제공 및 법적 권리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의료적·심리적·물질적 지원, 그리고 고용, 교육 및 훈련의 기회, 국가 보상이며(제6조), 사건을 접수한 국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 이외에 인도주의적, 온정주의적 요소를 고려하여 일시적·영구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조). 또한 피해자의 본국송환은 법적 절차의 진행이나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그러나 본 의정서가 한국에서 국내법상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의정서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행위로, 즉각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룩하고 이러한 지원제도의 미비로 한국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체류지위와 관련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특칙의 규정 또한 없어, 뉴질랜드, 영국, 독일 등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자가 누리는 범죄피해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그러므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하거나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특칙을 구성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나,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 이주민의 취약성으로 인해 사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워 보통 조직 범죄나 성매매 단속 등의 수사과정에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 및 사법기관의 인식매매 피해자 식별에 관한 기준과 이를 위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인신매매 범죄와 관련한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조치는 뉴질랜드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체계를 참조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경찰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통해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국민과 동일한 범죄피해자 보상, 보호 및 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이 되며, 노동부와 외교부의 체계를 구축하여 인신매매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피해자의 본국송환과

장기체류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하고 있다.

4. 통합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전달체계 마련

외국인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특수한 지원의 욕구를 갖는데,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 등의 본국의 송환, 유족 또는 가족의 초청, 불안정한 거주의 문제나 범죄피해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 및 사법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교통비 부족의 문제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은 범죄피해의 회복과정이나 범죄피해자로서의 권리 행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서는 이러한 외국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외국인 이주민을 지원하는 민간 지원단체들은 범죄피해자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앞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사례 분석을 통해서, 일부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해 체류지위 내지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례들도 발견되나, 이러한 지원은 일부의 센터에 한정되어 있어 일관된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그리고 연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요청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외국인 지원체계와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실질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지원부서 및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 지원체계가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외무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 부서, 이주 노동 담당 부서와 정보공유 및 협력이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와 이주민 지원 단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통합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홍보, 통역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광석, “사회보상의 국제기준 및 국제적 보장 – 국가유공자보상, 접종피해보상, 의사상자 보상 및 범죄피해자구조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0(1), 171-193, 2001.

김용세, “한국 범죄피해자지원법제의 현황과 발전방향”, 피해자학연구, 20(1), 41-56, 2012.

김정규·신동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95-418, 2010.

김창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개정된 범죄피해자법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50, 447-475, 2010.

김현철,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김혜경, “범죄피해자 구조금지급의 법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6(1), 115-150, 2015.

김혜정·강승기,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영남법학, 38, 1-20, 2014.

박동수,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과 범죄피해의 관계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3(2), 59-86, 2017.

방승주,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기본권주체”, 유럽헌법연구. 19. 155-191, 2015.

보건복지부,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한국개발연구원, 2006.

송봉규,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과학연구, 22(4), 209-232, 2015.

오경식·신의진·김혜경·김지선·김한균, “중장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 범죄피해자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법무부, 2011.

이건호,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9-09, 1999.

이공주,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6(4), 135-157, 2016.

이훈동,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의 연구”, 교정연구, (52), 7-24, 2011.

원혜욱·강경래·이희정,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외국의 법과 제도”, 법무부 인권구조

과, 2015.
장병일·성홍새,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대한 효과분석 : 스위스 자문센터 경험에 대한 비교적 고찰을 통한 한국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2007.
차훈진·조용철, “외국인 범죄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8, 187-211, 2012.
최수형·황지태·장다혜·이동원, “전국범죄피해조사(IV) : 2014년 범죄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최영신·강석진,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300, 2012.
최영신·장현석, “외국인 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277,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년 범죄피해자지원전문가 기초교육과정 교재”, 법무부(미간행), 2017.
홍세영·이현, “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52), 25-51, 2011.
황태정, “영국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법제도적 시사점.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8호, 269-304,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정책 통계월보 2017년 10월호.

2. 국외문헌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the Criminal Injuries Compensation Scheme(2014.9.8.), UK government, 2014.
Lauren Villagran, The Victims’ Movement in Mexico, Working Paper Series on Civic Engagement and Public Security in Mexico(2013.8.), Mexico Institute, 2013.
Law Commission, Compensation Crime Victims, Issue Paper 11(October 2008), Wellington, New Zealand, 2008.
Nicolás Rodríguez Serna and Jean-François Durieux, The displaced as victims

of organised crime: Mexico and Colombia compared, in D.J. Cantor and N. Rodríguez Serna (eds.), The New Refugees: Crime and Displacement in Latin America,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2015.

3. 인터넷 자료

노컷뉴스(2010.8.6.), 같은 외국인인데, 범인에겐 변호사, 피해자는 무지원 http://www.nocutnews.co.kr/news/741904.

동아일보(2010.12.15), [2010그 사건 그 후]〈5〉베트남 새댁, 정신병력 남편에 피살 http://news.donga.com/Series/70030000000674/3/70030000000674/20101215/33291319/1#csidx66d0e72646f60389b6e1cc9068a27b7.

법률신문(2013.2.28), [해외견학연수기] 뉴질랜드의 피해자 지원제도를 돌아보고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2831.

연합뉴스(2014.12.16), 토막살인 피해자 유족, 범죄피해 국가구조금 못 받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6/0200000000AKR20141216179900061.HTML?input=1179m.

New Zealand Immigration, How an employer may be exploiting employees,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policy-and-law/integrity-of-the-immigration-system/migrant-exploitation(검색일: 2017.11.26.).

New Zealand Immigration, Help for 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policy-and-law/integrity-of-the-immigration-system/people-trafficking/help-for-victims-of-people-trafficking(검색일: 2017.11.26.).

New Zealand Department of Labour(2009), PLAN OF ACTION TO PREVENT PEOPLE TRAFFICKING, https://www.immigration.govt.nz/documents/about-us/plan-of-action-to-prevent-people-trafficking.pdf.

Council of Europ Protal Treaty Office, Treaty No.116, Strasbourg, 24/11/1983,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rms/0900001680079751.

2001/220/JHA: Council Framework Decision of 15 March 2001 on the standing of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01.082.01.0001.01.ENG&toc=OJ:L:2001:082:TOC.

Directive 2011/36/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April 2011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and protecting its victim,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101:0001:0011:EN:PDF.

DIRECTIVE 2012/29/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and replacing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1/220/JHA,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12L0029#ntr4-L_2012315EN.01005701-E0004.

4. 예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대검찰청 예규 767호(2017. 11.6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예규 제777호(2015. 4. 16 개정).

5. 판례

헌법재판소 1989. 4. 17.선고 88헌마3 결정.
헌법재판소 2007. 8. 30.선고 2004헌마670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선고 2009헌마354 결정.

Abstract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 and Improvement Plan

Choi, Young-shin • Chang, Da-hye • Oh, Kyung-seok

1. Purpose and Necessity

Foreigner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victimization by crimes. Despite this fact, in Korea, not much attention has been accorded to the reality of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and the support and protection currently available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looks in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hat are currently provided by such institutions as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nd carries out a case study on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to identify the issues with the current support and protection policie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and possible ways to improve them.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s the principles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regarding support and protection for crime victims, and overviews programs and legislations aimed at supporting crime victims in other countrie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relevant programs in Korea.

In Korea, financial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such as subsidies for medical treatment-are provided only to foreigners legally staying in Korea, and the Relief Grants for Crime Victims are offered only to foreigners from countries that provide such grants to Koreans. This study reviews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port program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in effect to identify the practical issues caused by the relevant statutes. This study also explores how the eligibility criteria of the Crime Victim Fund and the beneficiaries of the Relief Grants for Crime Victims should be expand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in Korea,

and provide them with meaningful support to address the harm they suffered.

2. Method

A. Literature Review

To explore the above issues, this study reviewewd previous literatures and carried out a case study.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e researchers went over previous researches on programs and policies offering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in Korea. Due to the small number of previous literatures on foreign victims of crimes in Korea, the researchers relied on news articles and press releases from ministries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issues with programs and policie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B. Case Study

The case study on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was carried out in three parts. The first part looked into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To be specific, the researchers surveyed support provided to 87 foreign victims of crimes by 59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for a two-year period (2015 and 2016). The second part reviewed 20 cases collected through other institutions tasked with providing support and counseling services to immigrants. Lastly, the third part involves 21 cases collected from the Women Migrants Human Rights Center,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helters for Women Migrants, and the Seoul Women Migrants Counseling Center.

The cases regarding support for foreign victims provid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categorizing and qua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verall cases. As for the other two parts of the case study, qualitative methods were employed to categorize the cases into different types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3. Support Programs for Crime Victims and Foreign Residents in Korea

A. Protec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Crime Victims in Korea

(Constitutional Rights of Crime Victims) Article 27(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A victim of a crime shall be entitled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s under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Act." According to Article 30, "citizens who have suffered bodily injury or death due to criminal acts of others may receive aid from the State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Relief Grants for Crime Victims) Korea has statutory procedures in place to realize crime victims' constitutional rights to receive aid from the Stat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tipulates that a victim can receive relief grant if: i) he/she is unable to obtain full or partial compensation for criminal damage, or ii) he/she becomes a victim subject to relief after providing a clue to the investigation, such as a complaint or accusation, presenting statements, or giving testimony or submitting material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r trial of a criminal case of his/her own or any other person (Article 16). The Act provides for three types of relief grant: bereaved family relief grant, disability relief grant, and serious injury relief grant.

(Provision of Access to Criminal Justice)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other laws related to protection of crime victims contain various provisions that provide for programs aimed at protecting crime victims' privacy and personal security. These programs include: i) preparation of statements under pseudonyms; ii) security measures by the police; iii) provision of emergency pagers to victims; iv) provision of temporary shelters; v) preferential consideration for National Rental Houses and other supports related with rental houses; and vi) escort services to courts. Also,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crime victims

a range of rights regarding information related with criminal proceedings, including: i) the right to be informed of victims' rights and related supports during investigation; ii) the right to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investigation, trial, sentence, and parole; and iii) victim interview and counseling/medical/legal support at "Sunflower Centers" unde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for legal assistance for crime victims, victims of sexual violence or child abuse can receive legal assistance from public defenders appointed to them, and victims of sexual violence have access to free legal support provid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Lastly, foreign victims of crimes can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during legal proceedings.

(Recovery and Restoration Supports) As for medical support,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require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to provide medical services to crime victims, which include financial assistance for medical bills. Also, the Ministry of Justice provides medical assistance to victims of homicide, robbery, rape, assault, arson, and other violent crimes who suffer from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through its welfare centers for crime victims called "Smile Centers." In addition, a variety of programs are in place to provide financial, tangible, and psychological support aimed at helping crime victims recover from their experience. i) Financial support for caregiver services, ancillary expenses, and care services is available for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legally staying in Korea. ii) For victims having difficulties with finding jobs because of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injuries they suffere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pay for thei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o that they can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iii)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provides for financial, tangible,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aimed at helping victims recover from their experiences and restore their lives. iv) The bereaved family of a victim can receive financial support for funeral expenses. v) In cases where a violent crime took place at a residential building, clean-up services are provided. vi) Victims of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prostitution can turn to counseling centers and shelters for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as well as vocational training and information on possible job opportunities.

B. Foreign Residents in Korea

As of October 2017, more than 2,135 thousand foreign residents are living in Korea, a figure which increased more than 2.3 times for the last 11 years. As of the end of October 2017, foreign residents (2,135,049) take up 4.1% of the registered population of Korea (51,769,092).

Long-term foreign residents take up 73 to 80 percent of all foreign residents in Korea, a figure which only slightly fluctuated over the years. The percentage of short-term foreign residents remained between 20 and 27 percent. Therefore, the majority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are long-term foreign residents.

While the percentage of foreign residents on E-9 visa (non-professional employment) is declining, the number of residents on E-9 did not decline because the absolut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creased. These residents represent a group particularly vulnerable in the Korean society, because they relatively lack the emotional and cultural connection with Korea compared with foreign residents on F-4 visa (Koreans lliving abroad) or H-2 visa (visiting employment).

As for the gender mix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males comprise 55 to 57 percent of all foreign residents, whereas females take up 43 to 45 percent. The percentage of males exceed that of females by more than 10 percent. Also, compared with the general Korean population, the percentage of foreign residents under 19 and over 60 is lower, and the percentage of residents between 20 and 50 is higher.

As of the end of October 2017, Chinese residents in Korea account for the largest part of all foreign residents at 47.4 percent, in which residents of Korean descent takes up 31.6 percent. The second largest group of foreign residents come from Vietnam (7.8%), followed by the United States (7.1%) and Thailand (5.8). The

percentage of residents from other countries are 3 percent or less, respectively. Foreign residents from the Philippines, Uzbekistan, Cambodia, Indonesia, Russia (Federation), and Mongolia account for 2.0% or higher, respectively.

4.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Number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Support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In 2015 and 2016,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took up the cases of 97 and 77 foreign victims of crimes, respectively. Of these victims, some of them only received telephone counseling or counseling by visit. The number of victims who received support other than counseling was 40 in 2015, and 47 in 2016. Of all foreign victims of crimes supported by the Centers, the percentage of victims who received support other than counseling was 41% in 2015, and 61% in 2016.

(Gender and Age Mix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Of the 87 foreign victims of crimes support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for the last tow years, the number of males was 42 (48.3%), and the number of females was 44 (51.7%). The percentage of female victims was slightly higher. As for ages, compared with the gender mix of all foreign residents, the percentages of victims in their 10's and 60's were lower, and the percentage of victims in their 30's was markedly higher.

(Victim-Assailant Relationships) A review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foreign victims of crimes and the assailants shows that victims and assailants had not known each other before the crimes in 32% of the cases (28), while victims and assailants had known each other before the crimes (spouses, colleagues, cohabitants, etc.) Therefore, the majority of foreign victims were victimized by their acquaintances.

(Types of Crimes) As for types of crimes, assault (including infliction of physical injury) accounts for the highest percentage at 54% of all cases (47 victims), followed by domestic violence (20.7%, 18 victims), sexual violence (8.0%, 7 victims), attempted homicide (6.9%, 6 victims), and homicide (5.7%, 5 victims)

(Harm Inflicted) Of the 87 foreign victims of crimes surveyed, 5 of them passed away due to the crimes (5.7%), 7 of them were disabled or seriously disabled by the crimes (8.0%), and 72 of them suffered bodily injury (82.8%). The highest number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supported by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suffered bodily injury.

(Characteristics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Of the foreign victims of crimes supported by the Centers, a starkly higher number of victims were referred to the Centers by the police (59 victims, 63%), while 9 victims (10%) contacted the Centers on their own, 7 victims were referred to by prosecutors (8%), and 8 victims were referred to the Centers by other agencies (9%).

In 2015 and 2016, only 8 victims were supported by the Crime Victim Fund through the Prosecutors' Office Review Committee. While these victims suffered bodily injuries requiring more than five weeks of medical treatment and received large sums of reimbursements for the treatment, they take up only a small percentage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supported by the Centers. The supports given to most of the foreign victims of crimes supported by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re determined by the Centers themselves.

5. Criminal Victimization of Foreigners: Focused on Immigrant Workers and Immigrant Women

A. Issues with Support for Immigrant Workers Victimized by Crimes

(Access to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Immigrant workers have only limited access to programs that support foreign victims of crimes, which is caused by the narrow scope of eligibility, compounded by other reasons such as the strict and complicated eligibility requirements. Even when immigrant workers manage to satisfy these requirements, most of them receive only financial support, which restricts their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Awareness of Support Program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Most of those surveyed by the researchers were not aware of the support programs in the first place. The employees in the public sector who come in contact with foreigners on a regular basis, members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NGO activists surveyed in this study seldom knew the existence of those programs or how they can access them, not to mention the victims themselves. Most interviewees provided answers in the line of "I didn't know we had such programs. Maybe I will apply myself."

(Reluctance towards Korean Justice System) Foreign victims of crimes were found to be highly reluctant to be involved in the Korean justice system. The reasons they provided include disadvantages that come from their status, possible unfairness during investigation caused by the lack of interpretation services for minority languages, and the indifference toward public authorities that comes from the victims' cultural background that tolerates resolution of conflicts through violence. Improvements for crime victim support programs should be coupled with measures to mitigate their reluctance by addressing these factors.

(Difficulty with Utilizing Support Program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Foreign victims of crimes are reluctant to utilize the available support programs for a number of reasons. The visa programs may change, although inevitably, and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make it difficult to protect and support unregistered residents. Other causes of the low usage of the support programs include the customary identification of criminal acts with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lack of initiative in investigation of racial crimes due to the lack of legislations that criminalize racist behaviors such as random assault, the victims' cultural backgrounds that justify or prefer resolution by violence, the lack of proactive regulation against abuse of judicial powers by Koreans, and the single-language environment in criminal and judicial agencies (lack of interpretation services for minority languages).

B. Issues with Support for Immigrant Women Victimized by Violence

The researchers identified the following limitations and issues with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immigrant women victimized by crimes such as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prostitution.

(Discrimination Regarding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and Support Programs) Immigrant women's access to the justice system and support programs are limited by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y experience in the process. i) They do not benefit from proper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ervices during judicial proceedings. ii) Members of the police and judicial agencies lack understanding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related support programs, and often exhibit discriminatory attitudes. iii)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Korean victims also apply to immigrant women without consideration of the latter group's vulnerability,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access the judicial services, protection, and support programs.

(Additional Harm and Limitation in Support Caused by Vulnerable Status) Immigrant women experience difficulties with actively responding to acts of crimes committed by their spouses, whether they are Koreans or foreigners, when their resident statuses are determined by their spouses. The Immigration Act has special provisions on immigrants by marriage and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ich provide for discretionary extension of residence during or after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and remedy proceedings. However, immigrant women do not enjoy meaningful access to this extension as they lack the in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es have a full discretion on the matter. In addition, victims of crimes other than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do not enjoy any special administrative attention, including extension of stay during judicial proceedings. Illegal female residents in Korea are not reluctant to contact judicial agencies even when they are victimized, as it would entail a risk of their illegal status being exposed, which would result in their deportation. The current Immigration Act has an exemption from the notification

requirement for those public officials who become aware of the illegal status of victim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relief or remedy to crime victims or victims of hui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such exemption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ies, and the criteria for the exemption are not clearly defined. Also, police officers and judicial officers often lack awareness or understanding on this exemption, which limits its effectiveness.

(Exclusion of Victims of Violence Committed by Foreigners) The protection and support programs currently in effect, other than the Relief Grants for Crime Victims, are only provided to legal foreign residents victimized by Koreans. They fail to address the harm caused by foreign criminals, which puts the lives of the victims at risk.

(Lack of Support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Forced Prostitution) Other than the laws punishing human trafficking, Korea has yet to introduc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victims of the crime. Although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are covered by the protection and support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mmercial Sex Acts and Protection, the victims do not enjoy a sufficient level of protection and support because of the failure to identify victims in the early stages, which in turn comes from the lack of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by judicial agencies. Stable support is also prevented by the absence of specific criteria for support such as the provision of living expenses or the expenses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or support for access to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Lack of Support System Based o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Needs of Foreign Victims) Foreign victims's specific needs include the provision of support for living expenses or expenses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However, these needs are not addressed by the current programs as they are designed mainly for Korean victims.

6. Issues and Improvement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A.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and Protection and Support Programs for Victims in Other Countries

(Principles of Support for Crime Victim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provide that nations should, at the least, respond to all victimizations that take place in their territories regardless of the progress and outcomes of criminal justice proceedings or the nationalities and statueses of the victims. Th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n Economic Community have been expanding the scope of compensta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ons on the basis of the conventions that have the same effect as their domestic law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lso offer compenstations for foreign residents, although the amounts of compenstation may vary.

(Compensation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New Zeland,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legislated compenstation for legally staying foreigners who suffered victimization in their therritories. Japan and Swiss, on the other hand, provide for compensation for residents with addresses in their countries. However, even the countries that require legal resident status for compensation offer support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even when they are illegal immigrants. Some of the victims are given long-term resident status as necessary, if they want. The New Zeland Ministry of Labor and the Immigration Bureau provide support for immigrants victimized by harrassment, fraud, and exploitation, and give the victims the option of staying in the countries during the criminal proceedings. This support does not require legal resident status.

(Support for Foreign Victims in Countries with Constitutional Compensation for Victims) Swiss and Mexico have compensation,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in place. Swiss makes it clear that reliefs for crime victims are not tied with

the victims' nationalities or addresses in its laws and guidelines, so that foreigners can benefirt from the programs. Mexico also specifically provides for rapid and effective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However, Mexico includes foreigners in the scope of compensation and support under its domestic laws, as the countries recognizes the vitim status accorded by decisions of international justice organizations under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B.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Expansion of Support for Foreign Victims for the Realization of Victims' Right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1) The beneficiaries of the Relief Grants for Crime Victims should be expanded for foreigners with adresses in Korea. Under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he Relief Grants for Crime Victims are offered only to foreigners from countries that provide such grants to Koreans, and victims killedor disabled by the crimes who are not covered by any of the other laws or compensated by the assailants. However, the limited scope of protection under the Act may effectively violate the basic human rights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Germany, Japan, Mexico, and Swiss have statutory provisions for compensation for foreigners victimized by crimes that took place within the scope of their soverign powers. Korea needs to consider the practices of these countries and revise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o that foreign victims of crimes who suffered serious harm can benefit from the Relief Grant. Discrimination based on nationality should be removed from the scope of beneficiaries, and the eligibility criteria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foreigners with addresses in Korea as is the case with Japan and Swiss.

(2) The support for crime victims need to be broadened regardless of the resident status or nationality of the assailants. The current rule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d the restoration support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Justice limit the scope of support to foreigners victimized by Koreans. This requirement should be removed, and the program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measures to achieve recovery and access to justice based on the specific harms caused by the crimes, and the needs of the victims.

(Enhanced Access to Justice that Takes Account of Characteristics of Foreign Victims)

(1) The relevant programs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meaningful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The enhancement of access to justice by foreign victims of crimes requires interpretation support provided by interpreters with guaranteed neutrality and credibility. Interpreters need to be offered education on protection and support for different crimes under the relevant laws. One of the possible ways for an effectiv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in the long run is to reinforce cooperation with NGOs for foreign residents who currently have interpretation systems in place.

(2) The resident status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need to be guaranteed. All foreign victims involved in criminal and remedy proceedings need to be given legal resident statuse during the proceedings, and the laws need to clearly provide for the possibility of extended stay when a victim needs to stay longer to recover from serious harm. Also, such extension should not be left to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A victim should be allowed to stay for a specified period if he/she satisfies the requirements regarding seriousness of crime or vulnerability clearly prescribed by the relevant laws.

(3) The notification system should be enhanced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in the early stages of judicial proceedings. To enhance access to justice by foreign victims, information on their rights and support programs need to be provided in languages that they can undrstand, and such information should include

the content specific to foreigners such as their status and residence, and introduction of support NGOs for immigrants.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s) Korea needs to enact an act on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he support system of New Zealand provides a nice frame of reference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New Zealand, once a victim is identified as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she has access to the same level of compensation, protection, and support available for New Zealand nationals. Also,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New Zealand offer the victims options of returning to their countries or staying in the country as long-term residents based on their needs.

(Integrated Delivery System for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by establishing a meaningful connection between the existing support system for foreigners and the support system for crime victims. Such delivery system includes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the public sector where the crime vitim support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support system for immigrant women i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an share information and cooperate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departments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charge of immigration and immigrant workers. In addition, a private sector network needs to be established among NGOs supporting immigrants, crime victims, and immigrant women.

부록

1.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조사표

기관명 :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						사례번호 :	
신청인	연 령	세	성 별	□남 □여	피해자와의 관 계	□본인 □기타(　　)	
범죄 피해 정보	피해자 정 보	국 적			연령/성별	세 / □남 □여	
		비자 상태	□ 합법 체류 □ 미상 □ 불법 체류		피해 정도	□사망 □장해/중상해 (2개월 이상) □상해 □심리치유 필요	
		직 업 (취업상태)	□ 무직 □ 미상 □ 취업		가족사항	□ 본인 (동거가족 없음) □ 동거가족 있음 (　　명)	
	가해자 정 보	국 적	□ 한국 □ 외국(　　)		피해자와의 관 계		
		연령/성별	세 / □남 □여		손해배상 청구 및 합의사항 유무	□유 □무	

기초상담일지					
지원 의뢰처	□ 본인 □ 검찰 □ 경찰 □ 유관기관(　　)			상담 일시	□ 2015 년 (　) 월 □ 2016 년 (　) 월
상담 방법	□ 내방	□ 피해자방문	□ 전화	□ 사이버	□ 기타
피해범죄 유형	□ 성폭력	□ 가정폭력	□ 살인	□ 강도	□ 폭행(상해)
	□ 방화	□ 재산범죄	□ 교통사고	□ 기타 (　　)	
외국인 상태	□ 결혼 이민자	□ 이주 노동자	□ 재외 동포	□ 기타 (　　)	
지원 내용	지원 요청 내용				
	센터 지원 내용	□ 검찰청 지원 서비스 연계 (　　) □ 센터 자체 지원 (　　) □ 스마일센터 연계 (　　)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보고	
사건번호 유무	□유 □무
기타 특이사항 (사안 관련 문제점 등)	

연구총서 17-AB-05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발　　행 | 2017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김 진 환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7,000원
인　　쇄 | (주)계문사 02-725-5216
I S B N | 979-11-87160-77-9 9333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